

論壇

과학수사기반 구축을 위한 법의학· 감식교육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¹⁾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임 준 태*

I. 서설

오늘날 형사소송절차에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증거의 발견, 수집 및 보존은 실제적 진실발견과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강력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檢警의 수사실패(無罪判決) 및 人權侵害

(고문치사사건 등) 사례는 과학적 수사방법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케 한다.²⁾ 최근에 발생한 엽기적 살인사건처럼³⁾ 특정범죄자에 의한 同種 혹은 類似 흉악범죄가 빈발하는가 하면, 이상심리자 혹은 정신병질자에⁴⁾ 의한 범죄가 빈발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사건들마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인 바, Criminal Profiling(범죄자 유형분석기법)과 같은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활용이 더욱 긴요해 졌다.⁵⁾

1) 同연구는 학술진흥재단 「2002년도 선도연구자지원」에 의거, 수행된 것입니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 [세계일보] 2002-11-09 27면 [검찰수사 바뀌어야 한다] 과학수사 도입 “조00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찰수사가 감압적으로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증거 위주의 과학수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년 동안 유무죄를 오가는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치과 의사 모녀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초동수사 실패로 현장에서 범행도구나 지문 등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 이모씨를 기소했지만 이씨와 변호인은 모형 아파트를 만들어 화재실험을 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씨의 무죄를 증명했다.... 와룡산에서 발견된 “개구리소년” 시신 매장 현장도 과학수사 인력이 뒤늦게 출동, 증거물 확보에 실패해 사건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동아일보 2004.07.18. “11개월간 20명 ‘엽기 살인’ 30대 용의자 검거”: 지난해 발생한 서울 부유층 일가족 연쇄살인을 포함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모두 20여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범이 경찰에 검거되었는 바, 최근들어 추가범행 사실들이 기소단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0년 04월 16일 01면 [연쇄살인 용의자 열달새 9명 살해]일명 Serial Killer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두영”사건의 경우, 열달사이에 철강회사 회장 부부 등 무려 9명을 연쇄살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4) 김00양 유괴(토막)살인사건 등을 상기하면, 최근의 이러한 범죄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01-05-30 27면 [김00양 유괴살해범 검거] 김00양(4) 납치 토막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지난 2001년 서울동부경찰서에 붙잡혔는 데, 범인은 경찰에서 ‘취직이 안되고 돈이 궁해 윤지양 부모에게 500만원을 요구할 생각으로 00양을 유괴했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토막냈다’고 말했다. 범인은 80년 작업 도중 왼손 중지와 약지가 잘려 나간 지체장애인이었다.....00양의 목을 돌려 살해하고 다음날 시체를 토막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 내다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흔히 범죄현장은 “증거의 바다 혹은 寶庫”라고 한다. 정상적인 심리상태 혹은 보통평균인의 수준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라면, 수사관의 추리와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이상심리자에 의한 특이한 범행인 경우, 합리적 추리가 더욱 어렵다. 뚜렷한 범행동기가 나타나지 않고 무작위·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이 빈발하면서, 범행현장에 유류된 물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만 수사의 방향을 추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광대경,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 학회보 제3호」(용인: 한국경찰학회, 2001), 2면 이하.⁵⁾

초동단계에서의 현장관찰 및 감식, 증거수집 소홀, 전문성 부족으로 공판단계에서 결국 피고인에게 無罪가 선고되는 등 실제적 진실발견에 대한 경찰수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특정 사건과 관련, 외국 법의학 전문가 의견이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뒤엎는 듯한 상황까지 초래된 바 있었다.⁷⁾ 따라서 사법경찰의 수사직무 전문성과 법의·감식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은 수사의 성과를 좌우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형사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실과학이라 할 수 있는 「법과학(forensic science) 혹은 법의학」,⁸⁾ 「범죄수사학(Criminalistic)」등 기초학문의 기반이 취약하며, 「법·의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그리고 경찰교육과정에서 관련분야 강좌마저 소홀한 실정이다. 즉 법과대학에 「범죄수사학」, 「법의학」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경찰관련학과에서도 「과학수사」 내지 「법의학」강좌는 거의 개설되지 않고 있다.⁹⁾

5)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은 다양한 사용례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者의 人格的 유형(타입)을 암시하는 범죄현장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Jackson/Bekerian, 2001, p. 3; Douglas·Burgess 등은 “그 혹은 그녀가 저지른 범죄의 분석에 기초한 범죄자 개인의 중요한 人性과 행위 특성을 확인”하는 것; Copson은 “범죄현장, 피해자 그리고 다른 수집가능한 증거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평가를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의 묘사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수사 활동에 대한 접근”; “범죄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형태(type, 類型,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범죄행동을 搜查하고 調査하는 과정”, Turvey, 2002, x xi . [세계일보] 2002-11-09 27면 [검찰수사 바꿔야 한다] 과학수사 도입.....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행동과학수사반”은 연쇄살인 등 대형사건이 보고되면 범죄인의 심리를 연구해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현장에 출동해 범행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고 범인의 심리상태와 범인의 모습까지 유추해 수사범위를 좁혀준다. 이 같은 과학적인 수사방법은 빠른 시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 양산을 막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6) 광대경,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용인 :한국경찰학회, 2001), 2면 이하.

7) 일명 치과의사모녀 살인사건에서 그와 같은 국가적 망신(?)을 경험한 바 있다. 문화일보 1999년 10월 26일자.....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지난 19일 파기환송심 5차공판에서 스위스의 세계적인 법의학자 토마스 크롱페셰르(53)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역전’을 위한 반격을 시작했다.가장 유력한 증거에 대해 권위있는 외국 법의학자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범원은 또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됐다; [뉴스메이커]99/9/23 낡은 법의학 지식 사람 잡을라....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놓고 국제 저명 법의학자들 검찰 주장 반박.....변호사 쪽의 손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저명한 국제 법의학자들이 속속 합류하는 덕분이다....

8) 혹자는 영어식으로 「legal medicine」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독일어식 표현에 의하면, 법의학:「Rechtsmedizin」, 법정의학:「Gerichtliche Medizin」이다.

9) 경찰관련학과에서는 경찰실무과목으로서 「범죄수사기초이론」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경찰실무 혹은 관련분야 경험이 적은 강사가 同강좌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해결의 관건이 될 수사자료의 발견·수집은 司法警察의 몫이다. 현장관찰을 비롯한 과학적 초동수사의 성공을 통하여¹⁰⁾ 형사사법기관(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경찰 수사업무의 전문화·과학화에 기여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기초학문 발전을 위한 대학교육 및 경찰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과학적 수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수사경찰의 실태와 문제를 실무현장 중심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선진 각국의 경찰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의학·감식교육 실태, 전문가 양성과정 및 인사관련분야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를 하였다. 특히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현지 경찰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II. 과학수사와 용어의 구분

흔히 과학수사와 관련, 법의학·법과학·감식·범죄수사학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바, 그 개념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법과학(Forensic Science)

현대 과학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法科學(Forensic Science)¹¹⁾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과학의 이론과 기술을 범죄수사나 재판상의 증거물에 활용하여 법관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이용하는 학문이다.¹²⁾

즉, 감정·감식에 관한 과학을 총칭하며, 사건 및 사고와 관련된 증거물에 대하여 전문인력이 과학적인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수사나 재판에 중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과학의 한 분야로서 각종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감정하는 학문이다.¹³⁾ 소송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을 감정하여 과학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10) [세계일보] 2002-09-30 22면: 경찰, 마구잡이 삼질로 유골발굴/死因밝힐 결정적물증 훼손...개구리소년 유골이 처음 발견됐을 때 경찰이 사망원인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현장을 마구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비상식적인 초동조치 때문에 타살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놓쳐 경찰 수사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11) Forensic은 고대 로마시대의 Forum 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상거래를 하거나 논쟁을 하는 장소였다가 근래 들어 공개토론회의나 법정, 재판소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Forensic은 사전적 의미로 "법정변론을 위한", "토론의" 등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서, Forensic Science는 법정변론을 위하여 이용되는 과학, 즉 법정과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同 旨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서울: 현암사, 2002), 22면.

12) 유영찬, 2002, 22면 이하.

13) <http://www.kifos.com/fos/fos.htm.html>.

지원하는 바, 재판과학(裁判科學) 또는 감정과학(鑑定科學)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법과학은 국가마다 분류가 다르지만 크게 법의학과 혐의의 법과학으로 분류한다.¹⁴⁾ 보통 법과학 또는 범죄감식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¹⁵⁾ 법과학분석 내용에는 증거물확인(identification), 증거물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원인규명(determination of cause) 그리고 범죄의 再구성(reconstruction)이 포함된다.¹⁶⁾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과학분야 업무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독극물·부정의약품·부정식품·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초·환각물질·화공약품·섬유·토양·페인트·부정유류·중금속·총기·화약류·화재·폭발사고·기계·구조물안전사고·음성분석·교통사고 감정 등이다.¹⁷⁾

2. 법의학(forensic medicine, Rechtsmedizin)

法醫學은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서유럽에서는 1249년 이탈리아의 외과의사 후고 v. 루카가 재판관의 명령으로 법의 감정(法醫鑑定)을 행한 것이 시초이다.¹⁸⁾

법의학(Rechtsmedizin)은 法廷醫學(gerichtliche Medizin)이라고도 일컬어지며, 醫學의 오랜 한 전문분야에 속하며, 범죄수사학과 함께 공동의 임무를 통하여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¹⁹⁾

법의학에 관한 개념정의는 이 두 가지 학문분야(법의학과 범죄수사학)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해준다: 법의학은 의학적 학문 분야인데, “법의학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론(Lehre)·연구(Forschung) 그리고 실무(Praxis) 속에 의학적 지식과 방법의 응용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²⁰⁾ 법의학자(법의학을 위한 전문의, 법정의학자 그리고 법정의사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醫師이다.²¹⁾ 법의학자는 의학교육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수년 동안 전문의사가 되기 위한 폭넓은 교육을 이수한 者이며, 또한 주무기관인 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者이다. 전문지식을 근거로 법의학자는 경찰이나 法院에 대하여 전문감정인으로서

14) 유명찬, 전게서, 22면. 혐의의 법과학은 법의학 이외의 분야로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15) 자연과학의 이론과 기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활용하는 범죄감식과학분야로써, 주로 분석대상인 증거물에 대하여 법생물학, 법이화학, 법이공학, 문서감정학, 거짓말탐지학, 유전자감식학 기타 특수기술분야로 나눌 수 있다.

16) 유명찬, 전게서, 30면 이하.

17) <http://www.nisi.go.kr/>

18)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front&p=%B9%FD%C0%C7%C7%D0>.

19) Wirth/Strauch, Rechtsmedizin, 2000, p. 1.

20) Schwerde, W.(1989): Gerichtliche Medizin und Kriminalistik, Zeitschrift Rechtsmed. 102: 423 Wirth/Strauch, 2000, p. 1에서 재인용.

활동하기도 한다.²²⁾

즉 법의학은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재판의학 또는 감정의학(鑑定醫學)이라고도 하며, 영·미에서 말하는 Forensic Medicine, Legal Medicine, Medical Jurisprudence, 독일의 Gerichtliche Medizin, Rechtsmedizin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의학은 범죄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하여 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의학의 한 분과이다.²³⁾ 치료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소위 생명존중의 의학이라면, 법의학은 사람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존중의 의학이라 할 수

있다.²⁴⁾

법의학은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²⁵⁾ 법의혈청학(forensic serology),²⁶⁾ 임상 법의학(clinical jurisprudence)의²⁷⁾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變死사건에서²⁸⁾ 시체부검 등으로 의학적 증명을 하는 법의 병리학분야와 범죄에 관한 심리적·정신의학적 분야를 다루는 법의정신의학적 분야로 나누기도 한다.²⁹⁾

법의학은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즉, 變死者에 대한 검안·부검 및 법의학적 증거물의 檢査로 살인·상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받아 범인색출, 罪의 유무 판정, 刑量의 결정 등에 응용된다.³⁰⁾ 이처럼 범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21) [동아일보] 2004-04-12 21면.....? 서울에서만 한 해 4000여건의 변사가 생기지만 3000여건이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검안서 한 장으로 사건이 종결된다?...사인이 불명확한 주검은 전문가의 검안 없이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재 30여명뿐인 법의 전문의를 최소한 2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22) Wirth/Strauch, 2000, p. 1.

23) 이상덕, 「법의학」(서울: 최신의학사, 1987), 1면 이하. 법의학은 법률의 적절한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또 감정에 응용되는 학문이며, 형사 사건에 있어 生體檢査·屍體檢査·物體檢査·現場檢査 등에 의하여 死因 등의 증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수사·재판의 자료를 제공하며 민사 사건에 있어 혈액형에 의한 친생자 감정, 업무상 재해 판정,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 및 재판의 과학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의 치안 유지와 인권옹호에 공헌을 하고 있는 응용의학의 한 부문이다.

24)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3934>.

25) 법의병리학이란 병사(病死) 이외의 모든 죽음, 즉 외상·질식, 이상온도 및 기압에 의한 장애, 기아(飢餓) 중독·주산기사망(週産期死亡), 학대아(虐待兒·천대아(賤待兒), 정신이상, 성범죄 등에 의한 외인사(外因死:violent death)와 평소에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 즉 그 사망이 어떤 질병 또는 신체 내부의 이상에 기인하는 소위 내인성 돌연사(sudden unexpected natural death)인지 또는 그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인불명례(死因不明例)인지를 알기 위하여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의 종류·사인·사후 경과시간·치사방법·사용흉기 및 사용독물 등을 규명하는 학문을 말한다.

26) 법의혈청학은 혈액·타액·정액·질액·모발·치아 및 골격 등 인체의 분비물 또는 조직을 재료로 한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혈청형 백혈구형(HLA 型)·타액형·지문분류·모발분류 및 인류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개인을 식별함으로써 범인색출 친생자감정(親生子鑑定) 등에 기여하는 학문을 말하며, 일명 과학수사학 또는 감식학(鑑識學)이라고도 한다.

27) 임상법의학은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질병 또는 손상과 死因과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28) 외인사와 사망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는 불명의 경우 등을 합하여 變死라 칭한다.

29) 유명찬, 전거서, 23면.

30)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3934>.

만큼 고도로 숙련된 경험과 과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범죄수사 및 형사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한 법의학분야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사체부검·검안, 병리조직 검사, 혈흔, 정액, 타액, 모발, 배설물, 유전자분석, 슈퍼임포즈, 플랑크톤, 범죄분석, 범죄면, 거짓말 탐지, 인영, 영상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³¹⁾

법의학부에는 법의학과, 생물학과, 범죄심리과, 문서사진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범죄수사학(Kriminalistik, 犯罪徵證學)

범죄수사학(Kriminalistik)은 형법(Strafrecht) 혹은 형사법(Kriminalrecht)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범죄수사학이 법학적 문제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독일대학에서는 법학의 한 분야로서 취급되어 왔다.³²⁾ 실제로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사람은 다름 아닌 Paul Johann Anselm Ritter von Feuerbach(1775 ~ 1833)라는 학자였다. 동인은 법철학자로서, Ansbach라는 지역의 향소법원장으로서 그리고 형사학자로서 근대 독일형법학 이론에 큰 업적을 남겼다.³³⁾ 그는

“법률없으면, 형벌없다(nulla poena, sine lege)”라는 죄형법정주의 문언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범응용의 한 방법으로서 범죄수사학을 활용하였는 바, 이와 같은 실증주의적 증거법원칙들이 규문주의 소송절차에서 활용되었다.

학문으로서 범죄수사학의 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범죄수사학은 특히 범죄학과 형법과의 관계에서 논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형사정책(Kriminalpolitik), 형법(Strafrecht), 범죄학(Kriminologie) 그리고 범죄수사학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① 형법은 구성요건(Tatbestaende)을 규정하고, 책임(Schuld)을 결정하고, 소송절차를 확정한다. 그리고 행형(Stravollzug)을 규정한다.

② 범죄학(Kriminologie)은 범죄발현 형태를 설명하고, 그러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③ 범죄수사학(Kriminalistik)은 범죄방지(Verbrechensverhuetung)와 증거발견(Beweisfindung)·증거보전(Beweissicherung) 그리고 입증(Beweisfuehrung)을 통한 형사범소추의 방법을 제공한다. 범죄수사학은 자연과학 및 정신과학을 활용한다.³⁴⁾

31) <http://www.nisi.go.kr/>

32) Weihmann, Kriminalistik: Ein Grundriss fuer Studium und Praxcis, 1996, p. 18.

33) Weihmann, 1996, pp. 18-19.

34) Weihmann, 1996, p. 23.

4. 감정·감식

법과학 감정·감식은 특수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과학 전문가가 그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얻은 판단을 법원 또는 범죄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측면에서 소송법상의 감식에 속하나, 일반적으로 과학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것만을 국한하여 과학수사에서의 감정·감식이라 한다.³⁵⁾

1) 감정(Expert evidence)

鑑定이란 소송의 제3자가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 또는 이에 바탕을 둔 원리에 입각하여 구체적 사실의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³⁶⁾ 감정인이란 法院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를 공술하거나 서류로써 제출하는 제3자를 지칭하며, 법원이 명하는 수도 있고,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위촉(촉탁)하기도 한다.

刑事訴訟法 제169조에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者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同法 제221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者에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民事訴訟法 제306조에는 “감정에 필요한 학식 경험이 있는 者는 감정의 의무가 있다.”

2) 감식(identification, Identifizierung)

鑑識이란 아직 감정에 이르기 前에 술선해서 범행현장에 대한 사진촬영, 지문채취, 범행과 관계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체에 대하여 증거물의 수집, 가치판단 및 그 檢査를 행하고, 범죄의 특징을 판단하는 등 광범위에 걸친 검사, 식별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³⁷⁾ 현재는 경찰의 수사담당 및 감식담당직원이 행한다.³⁸⁾

특히, 범죄감식의 경우 자연과학·정신과학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고,³⁹⁾ 조직적인 시설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사실을 밝히고 방증을 수집하는 방법이다.⁴⁰⁾

35)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s-1.html>.

36) 이상덕, 전게서, 16면 이하.

37) 이상덕, 전게서, 18면.

38) 일선경찰관서의 “과학수사계(과거 감식반)” 소속 수사경찰관이 우선적으로 맡고 있다.

39) 과학적 지식·기술인 이화학(理化學)·전기학·법의학·사진술·심리학 등을 응용하는 방법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보관하였다가 대조하는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혈흔·정액·모발·총기·탄환·화약류·기계류·독물·약품·유류·섬유류·착색료(着色料)·금속류·도양·사진·문서·도화·족흔적(足痕跡)·음성·증언 등이 이용된다.

40)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4406>.

5. 과학수사

현대사회의 범죄(犯罪)는 신속화·광역화·홍포화해지는 반면에 도시화·산업화, 인구 증가에 따른 개인주의 및 익명성의 증가로 인증(人證)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物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방법도 과학화 되어야 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科學搜查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identification), 증거의 수집분석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수사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종래 과학수사는 감정·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의미한다.⁴¹⁾ 일반적으로 범인의 발견과 범죄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과 과학기재 및 시설을 이용하여 합리적·조직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⁴²⁾

흔히 개인적 직관력·짐작 혹은 感에 의존하는 이른바 六感수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수사는 “과학을 이용한 수사”와⁴³⁾ “수사방법의 과학화”로 대별된다. 본논문에서는 주로 소위 “과학을 이용한 수사”기법에 대한 수사경찰관의 직무 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과학을 이용한 수사

(1) 과학적 지식의 이용

이학·화학·물리학·생물학·(법)의학·약리학·기계공학·전자공학·전기공학·정보공학·광물학·토양학·곤충학·섬유학·식품가공학·기상학·건축학 등의 자연과학분야의 지식은 물론이요, (범죄)심리학·사회학·논리학·통계학·회계학·음향학·음악학·체육학·철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분야의 과학적 지식이 이용된다.⁴⁴⁾

(2) 감식기재 등의 이용

수사자료의 검출·채집·감별 등을 위한 감식기재·재료와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41)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s-1.html>.

42) 이삼재, 『科學搜查入門』(서울: 정문출판사, 1983), 15면.

43) 과학적 지식·기술을 이용하여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과학적 기술의 이용은 감식기재·감식기술의 이용을 뜻한다.

44) 이러한 측면에서는 법과학(Forensic Science)과 법의학(Forensic Medicine)은 쉽게 구분이 되면, 법과학이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감식(Forensic Identification)은 법과학적, 법의학적 지식을 활용한 수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사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지문감식, 화재감식, 혈액·모발·땀 등의 감식, 정액(精液)·타액(唾液)·땀 등 분비물의 감식, 총기·탄알의 감정, 문서·필적·인영(印影)의 감정, 잠재지문·족흔적·윤적(바퀴흔, 輪跡)·혈흔의 검출 등을 위한 기기 및 재료, 자타살의 감별, 거짓말 탐지기활용, 슈퍼임포즈, DNA분석기법 등이 개발되어 있다.⁴⁵⁾ 특히 이러한 전문적인 감식 기법 활용 및 장비조작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사방법의 과학화-과학적으로 행하는 수사

수사법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行態研究, 犯罪手法分析)등 수사에서의 합리성·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다.⁴⁶⁾ 즉 합리적·조직적으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컴퓨터의 활용으로 지문원지, 수법원지 등의 집중적인 관리와 각종 조회 및 수배, 공조제보 등의 제도를 갖추어 수사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조제도를 활용한 조직수사는 과학수사의 증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직수사체계의 완비와 효율화가 더욱 긴요시 되고 있다.

Ⅲ. 증거재판주의와 과학수사

1. 증거재판주의와 수사의 중요성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구체적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파악을 전제로 한다.⁴⁷⁾ 사실관계의 확정, 즉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바, 범죄사실의 인정은 證據(Beweis)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307조).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Willkuer)에 의한 사실인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證據裁判主義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공식적으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⁴⁸⁾ 법원은 모든 증거방법(Beweismittel)의 가치를 드러내어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절차의 이념을 달성하고, 증거재판 원칙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활동이 과학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의 일환인 수사(Ermittlung, investigation)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과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즉

45) 이삼재, 전계서, 16면.

46)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7570>.

47) 이재상, 「형사소송법」(서울 박영사, 1999), 447면.

48) Weiland, Bernd, Einguehrung in die Praxis des Strafverfahrens, s. Aufl, 1996, p. 111.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의 활동을 말한다.⁴⁹⁾ 捜査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Investigation”은 다양하게 개념정의되고 있다.⁵⁰⁾ 예를 들면, investigate의 어원은 “토론하다, 논의하다, 음미하다(“discuss”) 그리고 ”조사하다, 탐구하다, 찾아내다(“explore”)와 동의어라고 하며, 명사형인 Investigation은 “토론(“discussion”), “탐구(“research)”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Webster 사전에 의하면, ”찾다, 조사하다(to search into); 상세하게 조사하다(examine in detail); 체계적으로 조사하다(inquire into systematically)”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수사는 경찰의 주요한 기능이며, 수사 절차의 기본적인 목적은 완전하고 공평한 조사를 통하여 범행현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2. 대표적 수사실패 사례와 교훈

본항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게 한 사건에서, 장장 8여년

간의 법정공방을 거쳐 無罪로 확정된 최근 사건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수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몇몇 사건들을 주로 소개한다.

이들 사건들 중에는 다행히 眞犯이 체포되어 억울함이 해소된 경우도 있으나, 2003년 11월 현재까지 未濟사건으로 남은 것도 있으며, 급기야 영화의 소재로 선정되어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다. 초동수사단계에서의 지켜져야 할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이를 토대로 한 범인의 특정, 적법절차준수를 통한 인권 침해방지라는 기본원칙을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1) 화성연쇄살인사건

(1) 사건개요

86년 9월15일 오전6시20분쯤 수원에서 열무를 판 뒤 딸집에서 잠을 자고 귀가하던 이00(71)씨가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목초밭 쉼터미에서 실종 닷새만에 성폭행 당한 채 발견됐다. 부녀자만을 노리는 엽기적 연속 범행과 5년 이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진 경찰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49) 이재상, 1999, 169면, 한편, 미국의 경찰학자인 O.W.Wilson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범인을 확인·체포하고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평가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O.W. Wilson, et al., Administration(New York et al.:McGraw-Hill Companies,Inc., 1997), 5th Ed, p. 596.

50) Burstein, Harvey, Criminal Investigation An Introduction(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99), p. 22.

것이였다. 86년 한 햇 동안 반경 1km 이내에서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 살해사건만도 무려 네 차례나 됐다. 주춤하던 살인사건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은 88년 9월7일 안00(52)씨가 러닝셔츠로 목이 졸리고 흉기로 남자 당한 시체로 발견되면서부터다. 같은 해 9월16일 박00(당시 13)양이 안방에서 강간당한 채 살해된 뒤 용의자가 검거돼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던 연쇄살인 사건은 이를 비롯 90, 91년 잇따라 중학생과 60대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을 경악케 했다.⁵¹⁾ 1차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강간 피살되였다. 한편, 무고한 부녀자 10명이 희생돼 「얼굴없는 범행」으로 각인됐던 화성연쇄 살인사건 이후 5년여 만인 1996년 11월 3일에 다시 화성 인근지역에서 같은 수법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11차 사건).⁵²⁾

(2) 경찰수사의 실패 및 물의야기

10차례 연쇄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쏟아 부은 인력은 정식 수사인력만 무려 30만 명 이상. 여기에 방법순찰대·민간기동대 등 1백29만명을 합할 경우 1백80만 명이 범인의 뒤를 쫓아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1차 사건부터 범인 검거는 고사하고 윤곽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동안 「여자에 굶주린 정신도착자」에 주안점을 두고 용의자 18,000여 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지문과 유전자 감식 의뢰만도 4만여 건을 하는 등 의혹을 보여 왔으나 용의자에 대한 자백강요, 가혹행위 등의 무리수를 두는 등 오점을 남겨왔다. 경찰은 「연쇄사건이 대부분 야산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밤중에 발생해왔으며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 입고 있는 블라우스 등 옷가지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해왔다」며 물증 미확보를 미궁에 빠진 수사의 주원인으로 돌려왔다.

한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압과 인권침해에 의존한 경찰의 무리한 六感수사가 한 시민과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였다.⁵³⁾ 화성사건이 처음 일어난 86년 9월 이후 1993년

51) 중앙일보 1996년 11월 04일 22면. 1차=86년 9월19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풀밭에서 이00씨(71)가 하의가 벗겨진 채 목졸린 시체로 발견. 2차=86년 10월23일.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서 박00씨(25)가 양손이 뒤로 묶이고 스타킹으로 목졸린 채 발견. 강간 흔적. 3차=86년 12월21일. 이00씨(22)가 약혼자를 만나고 오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논두렁에서 스타킹으로 목졸린 채 발견. 머리에 팬티 씌움. 4차=87년 1월11일. 홍00양(18)이 태안읍 황계리 논에서 입에 재갈이 물리고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목도리로 목졸린 채 발견. 우산 손잡이로 음부 난행. 5차=87년 4월23일. 권00씨(25)가 태안읍 안녕리 공장 옆 냇굴 밑에서 브래지어로 양손이 묶인 채 발견. 6차=87년 5월9일. 박00씨(29)가 남편 마중 갔다가 태안읍 진안리 야산에서 브래지어·내의·블라우스로 세 차례 목졸린 채 발견. 7차=88년 9월8일. 안00씨(54)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에서 블라우스로 목졸린 채 발견. 음부에 복숭아 조각 삽입. 8차(범인 검거)=88년 9월16일. 박00양(14)이 태안읍 진안리 집에서 잠자다 목졸려 살해된 채 발견. 남자 체모에서 티타늄 원소 검출. 9차=90년 11월16일. 김00양(14)이 태안읍 병점5리 석재공장 뒤 야산에서 목졸린 채 발견. 음부에 불펜·숟가락·포크 삽입. 10차=91년 4월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권00씨(69)가 하의가 벗겨지고 스카프로 목졸린 채 발견. 음부에 양말 삽입.

52) 중앙일보 1996년 11월 4일 22면.

53) 중앙일보 1993년 08월 04일 <초점> 화성용의자 자살기도, 경찰 무리한 수사관행이 원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행을 자백했던 용의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경찰이 아직도 무리한 수사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살을 기도한 김종경씨(41)가 자백을 할 경우 극형을 선고 받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건의 범인도 아니면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미뤄보면 그동안 철저하게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8월까지 경찰에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피해자는 김00씨를 포함해 모두 6명. 특히 90년 12월 18일 경찰조사를 받았던 차00씨(당시38)는 무혐의로 풀려난 지 4시간만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기도 했다. 6차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87년 5월 10일에는 홍씨가 피살자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많은 것을 빗대 화성군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에게 “빨간 옷을 입으면 죽는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3, 4, 6차 사건범행을 자백했으나 연행 7일만에 무혐의 석방됐다.

이밖에 문모, 박모씨와 윤모군(19)등도 연행돼 각각 1~2건의 범행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접견과정 등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을 반복해 석방되기도 했다.⁵⁴⁾ 그러나 이들은 다행히 무죄 방면됐지만 하나같이 고문의 심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경찰의 강압수사 관행과 인권침해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경찰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과학적 수사관행 정착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

2) 김시훈사건

피고인 김시훈은 살인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된 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別件으로 선고받은 구류형의 집행 중 수사경찰관의 강요에 못 이겨 살인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항소법원은 그 진술서에 기재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서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 眞犯人이 검거되어 구속 기소되자 대법원은 原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면서 全員合議體判決로써 피의자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의 판례(형사소송법 제313조설)를 변경하였다.⁵⁵⁾ 同판결은⁵⁶⁾ 대법원이 피고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3조)”를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인하여 “被疑者가 作成한 陳述書의 證據能力”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허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서대문경찰서가 이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심령술사 김모씨의 단순한 영감에 의해 떠오른 인물을 지목하면서 착수됐다. 사건현장에서 수집한 단서로부터 용의자를 추적하는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한 원시적인 이 같은 사건 수사는 출발부터 상식을 초월한 넌센스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능력도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54) 중앙일보 1990년 12월 20일자.

55) 백형구, 「刑事訴訟法講義」(서울: 박영사, 1994), 663면.

56) 대판 1982.9.14, 82도 1479(소승)(김시훈사건)[공보 692호 980면].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3) 김기웅순경 사건⁵⁷⁾

(1)사건 개요

1992년 11월29일 아침 서울 관악구 某여관 203호에서 18세의 카페 종업원 李모양이 목이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그 날 새벽 3시반 쯤 李양과 이 여관에서 함께 투숙했던 김씨였다. 김씨는 오전 7시쯤 혼자 여관을 나가 인근의 직장에 출근했다가 오전 10시쯤 李양을 깨우기 위해 여관방에 돌아와 보니 李양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됐다.⁵⁸⁾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때 자신이 범인이라고 自白까지 했지만, 자백을 번복하고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던 김씨는 1992년 말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유죄가 인정돼 1993년 1심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1993년 말 수감 중 眞犯이 체포되었다. 진범이 잡힌 후인 1994년 1월 26일, 대법원은 K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無罪 취지로 파기했다.

(2)사건의 쟁점과 교훈

무엇보다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법의학적 소견이다. 김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보이는 증거도 있기는 좀 있었지만 검찰이나 법원 2심까지 이 증거들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도 李양 시신의 시강이 전신에 나타난 점, 胃속 내용물의 소화정도, 直腸(직장)온도, 시반이 뚜렷한 점 등 법의학 소견이 유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공교로운 우연들이, 김씨로서는 확률이 지극히 낮은 불운한 惡運(악운)들이 겹치고 겹쳐서 범인으로 단정된 것이다. 검찰은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했던 서울경찰청의 K모 반장이 경험 미숙으로 시강이나 시반, 직장온도 측정 등을 서툴게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이야 법의학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추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는 결국 초동수사를 통해 내놓는 감식팀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감식팀이 미숙해서 틀린 자료를 법의학자들에게 入力하게 되면 出力, 그러니까 법의학적 판단도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법의학적 추정이라는 것을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전적으로 신뢰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이

57) 同내용은 월간조선 1999년 2월호[심층추적: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수사와 재판의 드라마]내용을 요약, 소개한 것이다.

58)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숨진 李양과 함께 투숙한 사람으로 밤새 같이 있었다. 오전 7시에 나간 것은 인정되지만, 직장에 나갔다가 여관방에 李양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구태여 李양을 깨우기 위해 10시에 돌아왔다는 게 어색하다. 또 李양이 결혼해달라고 졸라 갈등이 있었고, K씨가 李양이 뱀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한 사실까지 있는 K씨가 여관을 나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여관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관 문이 아닌 창문 등으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없다. K씨는 투숙 당시 여관 주인에게 아침 8시에 인터폰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인이 실수로 7시에 인터폰을 했지만 K씨는 즉시 응답했다. 그가 이미 깨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사건은 주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김씨에게 有罪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그 후에 진범이 잡혔더라면 이 사건은 법원으로서 [稀代(희대)의 誤判(오판)]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同사건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1994년 대검 강력부는 [K씨 사건을 계기로 본 강력 사건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1백23페이지 짜리 소책자까지 만들기도 했다.

4)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1) 사건개요

① 사건발생 및 피의자 긴급구속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40분~9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의 M APT ○동 7××호 안방에서 원인 모를 화재 발생. 주민의 신고(오전 9시24분)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안방 장롱 안에서 난 불은 장롱일부와 옷들과 커튼과 벽지 일부만을 태운 후 거의 꺼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화재 수습 후 소방관에 의해 부인 최00씨(치과의사)와 한 살박이 딸 00양 등 두 명이 화장실 욕조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⁵⁹⁾ 경찰에서는 이 집의 가장인 이00씨와 J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하기 시작했다. 그 후 국내 부검의의 법의학 소견서를 근거로 오전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⁶⁰⁾

이를 근거로 1995년 9월 2일 同사건의 범인을 남편인 이00씨로 결론짓고 이씨를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② 재판과정 : 死刑에서 無罪로

1심 死刑, 2심 無罪, 대법원의 有罪 취지 파기환송, 항소심의 두 번째 無罪, 그리고 검찰의 再上告로 이어지는 엇갈린 판결 끝에 자유인이 됐다.⁶¹⁾

▷1심 : 死刑宣告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서부지원(합의부)은 1996년 2월 23일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인정한 증거는 법의학자들의 감정에 의한 사망추정 시간이었다.

▷2심 : 無罪

서울고등법원은 1996년 6월 26일 “李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가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無罪를 선고했다.⁶²⁾ 변호인단은 잘못된 인정된 화재 발견 시각 및 사망 추정시각을

59) <http://org.catholic.or.kr/chrc/t-main2-1.htm>.

60)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부검 및 거짓말 탐지기 반응결과 사망추정시간이 오전 4시로 李씨가 출근하기전이었으며, ▲화재발생 시각도 오전7시 전후로 나타난 점을 들었다.

61) 한국일보 2003-02-27 (사회) 29면.

62) 조선일보 96/6/26.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방대한 자료검토와 외국 법의학 저서들을 근거로 하여 검찰 증거의 불확실성을 증명해냈다.⁶³⁾ 1996년 7월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심(대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1998년 11월 13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⁶⁴⁾

▷4심(고등법원): 無罪

2001년 2월 17일 피고인은 환송심(고등법원)에서 다시 無罪를 선고받았다.⁶⁵⁾ 검찰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再上告하였다.

▷5심(대법원): 무죄확정(2003년 2월 26일)

대법원은 2003년 2월 26일 이 사건의

再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⁶⁶⁾ 치과 의사 모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8년간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 無罪가 최종 선고된 것이다.

(3) 초동수사상의 문제점과⁶⁷⁾ 교훈

① 초동수사 과정의 문제점들

▷ 사망한 崔씨의 손톱을 잘라두지 않은 것이다. 손톱을 잘라두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는 법의학자도 있었는데, 감식팀이나 解剖醫는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 부검 과정에서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찍어두지 않은 것도 큰 결함이다.

양측성 屍斑과 관련, 여러 각도의 시신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崔씨 시신 앞부분에 얼마나 시반이 형성돼 있었는지 자료를 남길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케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나 모두 증명력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러 정황들도 있으며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無罪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63) 중앙일보 1996년 07월 01일 23면: 齒齧모녀 살해사건 '무죄' 1등공신은 인터넷- 李씨 변호인단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천여 의학논문에서 검찰측 주장을 무력화시킬 자료들을 찾아낸 뒤 이를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해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4) 중앙일보 1998년 11월 14일 31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접증거가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주검의 강직(시강)과 반점(시반)에 대한 국내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근거로 사망 추정시간이 이씨 출근 전인 7시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법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시강 등을 기초로 한 사망시각 추정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위환경과 사람에 따라 시강과 시반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이 7시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방화시간을 두고서도 "검찰은 일러도 아침 8시40분에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아파트 안방 화재가 범인의 지능적인 지연방화에 따라 늦게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범행 예상시간인 7시 이전에 발생한 화재가 그처럼 늦게 발견된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有罪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67) 동내용은 월간조선 1999년 2월호에 게재된 [심층추적: 치과 의사 모녀 살인사건 수사와 재판의 드라마]에서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수 있었고, 그랬다면 **崔씨 시신에 양측성 시반이 생겼는지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었다.**

▷ 현장 감식 과정에서 시신의 直腸(직장) 온도를 재 놓지 않았다.

直腸이란 大腸(대장) 말단부로 항문에 이르는 부분이다. 직장온도는 항문에 체온계를 집어 넣어서 측정하게 된다. 시신의 직장온도는 사망 직후부터 꾸준히 하락하므로 사망 시각 추정에 중요한데 재놓지 않았다.

▷ 鑑識 당시 시신이 담겨 있던 물의 온도도 재 놓지 않았다.

물의 온도는 시강, 즉 시체의 경직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원래 급탕 공급되는 온도와 의 차이를 통해 범인이 물을 틀어 욕조에 받은 시각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안방의 손잡이 온도도 재놓지 않았다가 후일 손잡이를 잡았던 경비원의 기억에 의존, 추정 온도를 산출해 기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 **崔씨**의 직접 死因인 시신 목 부위의 물질 채취에 소홀했다.

끈에 강하게 졸렸던 목 부위에 붙은 물질을 잘 채취해 조사했다더라면 범행에 사용된 끈의 성분 등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② 교훈

이른 바 한국판 ‘OJ 심슨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장장 8여년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특히 사망시간 등에 대한 국내 법의학자들의 감정결과와 ‘추정’만 가능한 정황 증거의 신뢰성을 둘러싼 공방은 법의학, 검시제도, 수사관행, 사형제도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반이 약한 국내 법의학계의 수준과 실태에 대한 깊은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며, 초동수사 단계에서 빚어진 경찰실수는 과학적 수사방법 체득과 직무전문성 향상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IV. 한국의 법의학·감식교육 및 수사직무 교육실태

본항에서는 한국의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의 법의감식관련 교육실태와 경찰관련학과 및 경찰교육기관에서의 수사직무관련 교육실태를 주로 소개한다.

1.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법의학관련 강좌

서울대 법과대학에서는 4학년 2학기에 선택과목으로서 법의학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으나,⁶⁸⁾ 연세대, 고려대 법과대학에서는 법의학강좌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의과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법의학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법의학분야를 전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서울대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정빈·이윤성·이승덕 교수가 학부 및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⁶⁹⁾ 주요분야는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⁷⁰⁾ 法유전학, 법의독물학, 법의학 분야로 나뉘어 진다. 연구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의뢰된 부검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사건에 관련분야 지식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신원확인용 법의학교실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으며, DNA분석- 소위 DNA 지도-을 통한 개인식별(신원확인)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연세대

의과대학 법의학과는 1995년 2월 1일에 설립된 부서로서, 1999년 5월 1일부로 병리학교실의 조상호, 양우익 교수와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의 김종열, 최중훈 교수가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실제적인 법의학 교육 및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법의학과는 1명의 전임교수, 4명의 겸임교수, 1명의 강사, 2명의 연구원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⁷¹⁾

(3)고려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문국진 교수가 1976년 9월 1일 창설하였다. 비록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문국진 교수⁷²⁾, 황적준 교수의 노력으로 훌륭한 교실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법의학의 역사는 고려대 법의학교실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⁷³⁾

학부에 법의학강좌가 개설되어 있다.⁷⁴⁾ 대학원 의학과에서는 병리사회계열 법의학

68) http://law.snu.ac.kr/Information/info_process.asp. 2003년의 경우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강좌는 의과대학 이정빈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과대학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69) http://medicine.snu.ac.kr/professor/main3_sub03.asp#p01.

70) 법의병리학에서는 사망 후 변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손상과 관련된 결과들이 관심영역이다.

71) http://medicine.yonsei.ac.kr/class_subject/subject/law/intro_subject/contents.asp?con_no=734&sub_no=0&page_no=1; 연세대 원주대 법의학 강좌의 경우, 의학과 6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4시간에 걸쳐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과학교육연구소 법의관(이한영, 양경무박사)들이 맡고 있다.
in:<http://pathology.yonsei.ac.kr/student/2003%20법의학%20강의계획표.htm>.

72) 문국진 교수는 1976년 11월 26일 6명의 발기인과 함께 「대한법의학회」를 창립하였고, 현재까지 학회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73) <http://www.korea.ac.kr/~leg-med/intro.htm>.

전공을 개설, 임상법의학, 법의학청학, 법의독물학, 법의검시학, 의료법학, 법의병리학, 법의학청학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⁷⁵⁾ 황적준·한길로 교수와 이용욱 박사(연구강사)가 同강좌를 맡고 있다고 한다.⁷⁶⁾

(4) 경북대「수사과학대학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을 중심으로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각급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관들을 대상으로⁷⁷⁾ 「수사과학대학원」을 설립하여 한국의 과학수사 기반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⁷⁸⁾ 법정의학과, 과학수사과, 법의간호학과 등을 설치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⁷⁹⁾

(5) 기타대학들

카톨릭대⁸⁰⁾ 및 한양대 의대에서도⁸¹⁾ 법의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 경찰관련학과의 법의감식 관련 교육실태

경찰대의 경우 경찰수사론(4학점), 법의학(2학점), 범죄감식론(2학점), 관서실습(수사, 형사 등 4학점)과정을 이수케 하고 있다. 한편 일반 경찰행정학과의 경우 동국대(범죄수사론

74) 의과대학 의학과에서는 매주 3시간씩 총 14주간 법의학강의 및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75) http://graduate.korea.ac.kr/med_02.htm

76) <http://www.korea.ac.kr/~leg-med/staff.htm>.

77) 주교육 대상은 직접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검찰, 軍수사기관, 변호사, 행정자치관련 공무원 그리고 법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119 응급 구조요원, 소방대원, 일반 간호사 및 직장인 등이다. 불량 청소년 선도, 마약매춘관리, 성폭력 피해자상담, 폭력피해자간호, 가정폭력상담, 노인건강관리 상담, 법의정신 건강간호, 법의직업병 관리, 기타 법적 문제환자간호 등의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기타 과학수사에 흥미있는 者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78) http://www.kyungpook.ac.kr/index_dept.html. 정원은 30명이며, 2003년 3월 신입생을 선발, 야간수업으로 진행되며 학기당 6학점(총 30학점)을 이수, 주 2회 출석한다. 수사과학교육은 실증자 및 전과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신상의 수사력의 확대, 범죄의 예방, 각종 법률상담, 변사자 및 범죄 용의자의 신원 파악, 사망 원인의 규명, 타살의 경우 범죄 행위의 재구성 그리고 각종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와 각종 사고의 예방과 범죄 행위에 대한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하여 법의학의 기초로 범죄학, 법의 감식학, 인체 해부학, 범죄 심리학, 범죄수사학, 청소년 심리학, 법정신과학, 컴퓨터전산정보통신,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산업의학, 법의 화학, 독물학, 마약, 체액 감식, 자연모 및 인조모 감식, 문서감식, 법과학, 임상병리학, 법치의학, 인류고고학, 교통사고 역학, 화재감식, 범죄통계학 등 전문적인 과학수사 지식을 교육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전산정보통신망 구축, CC 카메라에 포착되는 사진 분석, 범죄 현장 및 피살자의 손상 등으로 범인의 유형 판별, 우리나라의 사망 통계 및 분석, 범죄유형분석, 범죄수사 및 신원확인에 도움되는 한국인의 각종 표준치의 통계 자료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79) 대학원생들을 위하여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 법의학 기초, 법과학개론, 법의학세미나, 의학기초, 산업 안전 및 재해 (Industrial Safety and Accident), 법의 병리학 (Forensic Pathology), 외상학 (Traumatology), 법의학의료정보관리 (Forensic Medicine Information Management), 검사학 (Laboratory Methodology), 법정신의학 (Forensic Psychiatry), 법치의학, 신원확인 (Identification), 환경 및 약물범죄 (Industrial Toxicology and Drug Toxicology), 자연과학방법론, 형법이해, 법의 검시학 (Medicolegal Investigation of Death), 수사학 (Criminal Investigation),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80) <http://www.cuk.ac.kr>

81) http://www.hanyang.ac.kr/search/gwamok/detail.phtml?haksu_no=MED331&cd=H3HBDC&title=법의학.

3학점) 및 과학수사(3학점) 교과목을 학습한다. 다른 대학의 경우 범죄수사론을 수강하고 있다.

3. 경찰교육기관에서의 법의감식 교육실태

본항에서는 「수사경찰관 전문화」를 위하여 수사보안연수소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⁸²⁾

〈표 1〉 수사보안연수소 수사전문화교육과정

과정별	교육대상	기간	횟수	1회인원	총교육인원
연수소 계(20과정)			57		3,450
수사지휘과정	경정·경감	12주	2	75	150
조사관리자연수과정	경감·경위	8주	2	75	150
형사전문화과정	경위이하	4주	4	80	320
조사실무과정	경사이하	4주	3	40	120
사이버범죄수사과정(고급)	경정이하	2주	1	40	40
사이버범죄수사과정(중급)	경위이하	2주	4	40	160
과학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4	80	320
화재사건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1	40	40
지능사범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2	40	80
마약류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3	80	240
컴스팟분석과정	경위이하	1주	3	50	150
학교폭력상담과정	경위이하	1주	3	80	240
여성폭력예방수사과정	경위이하	1주	6	50	300
인질범협상전문과정	경위, 경사	1주	2	80	160
경제금융사범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3	80	240
환경범죄수사과정	경위이하	1주	2	40	80
선거사범수사과정	경정이하	1주	2	40	80
보안수사지휘과정	경정~경위	2주	2	30	60
보안수사과정	경위이하	6주	3	40	120
보안실무과정	경위이하	2주	5	80	400

수사지휘과정, 과학수사과정, 형사전문화과정에서의 과학수사·감식분야 전문화 교육내용을 주로 살펴본다.

82) 경찰청, 「2003년도경찰교육훈련계획」(서울: 경찰청, 2003) 참조.

(1) 수사지휘과정

중점교육방향은 초동수사, 탐문수사, 현장감식 등 전반적인 수사기법을 체득하는 것이며, 민·형사 판례 등 연구, 실무이론 및 지휘능력 향상 그리고 세미나위주의 교육으로 문제해결 및 관리능력을 보강하는 것이며, 연간 150여명(경정·경감)을 교육시키고 있다.⁸³⁾ 기간은 12주(456시간, 1일 7시간)이며, 교과내용은 기본소양(7과목, 66시간) 14%, 직무분야(47과목, 390시간) 70%, 행정 16%이다. 특히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표 2〉 한국경찰의 수사지휘과정 교육내용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1. 어음수표법	10	15. 환경범죄수사	6	29. 인질범죄수사	4
2. 민법	10	16. 풍속사범수사	9	30. 시위사범수사	4
3. 즉결심판절차법	6	17. 폭력사범수사	6	31. 성폭력, 가정폭력 수사	6
4. 범죄학	10	18. 통신추적수사	8	32. 경찰청 과학수사과, 컴퓨터실 견학	7
5. 민·형사관련사건	10	19. 직무사례 세미나	40	3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실습견학	7
6. 법의학	17	20. 범죄조사분석(의물착오)	9	34. 컴스택의 이해	2
7. 법의학청학 및 유전자 지문	6	21. 거짓말탐지기등 장비취급요령	4	35. 최면술 수사기법	3
8. 법치의학	6	22. 현장감식	24	36. 출입국 규제요령	2
9. 외사범범죄수사	3	23. 화재사건수사	9	37. 선거관련법규 연구	3
10. 강력사건수사(수사본부운영)	9	24. 지문분류 및 채취	7	38.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3
11. 절도범 수사	6	25. 대형안전사고(폭발물, 건물붕괴)	6	39.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3
12. 마약사범수사	9	26. 수사예산확보 및 집행	2	40. 수사자료표 작성요령	3
13. 자금세탁방지법 및 FIU제도 해설	9	27. 수법·공조수사	9	41. 수사력 강화	3
14. 신용카드범죄수사	6	28. 사이버범죄수사	6	42. 현장견학(형사법정 등)	7

특히 同교육과정에서의 법의학(17시간), 법의학청학 및 유전자지문(6), 법치의학(6), 현장감식(24), 화재사건수사(9), 지문분류 및 채취(7), 최면술수사기법(3), 과학수사연구소실습(7) 등은 법의학감식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83) 경찰청, 「2003년도경찰교육훈련계획」, 91면 이하.

(2) 과학수사과정

전문적인 과학수사·감식(forensic identification)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야말로 지문채취 등 현장감식을 할 수 있는 과학수사요원(경위이하) 육성, 첨단 과학장비 사용요령 등 교육을 통한 과학수사기법 배양 그리고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초동조치 및 채취·감식요령을 숙달케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⁸⁴⁾ 중점교육방향은 유류지문·족적·혈흔 등 증거자료 발견채취기법 학습, 거짓말 탐지기수법영상시스템 등 과학수사장비 사용방법 숙달, 국과수 견학·범죄현장실습 등 감식기술 연마 위주의 교육이다. 연간 320여명에 대하여 2주간(76시간)에 걸쳐 교육시키며,⁸⁵⁾ 구체적인 법의감식관련 강좌는 다음과 같다:

현장감식 실습(9시간), 지문분류 및 채취요령(6), 족적채취 요령(3), 국과수 현장실습(21), CCTV 판독 및 현장사진 촬영기법(3), 몽타주 활용요령(2), 수사감식장비 사용요령(3), 과학수사(4), 수사자료표 작성(3), 통신추적수사(3) 등이다.

(3) 형사전문화과정

교육목표는 중요범죄 수사를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의 형사실무 요원 육성, 현장감식 등 실무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수사능력 배가 그리고 지능화·조직화되어가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정보 교류이다.⁸⁶⁾ 중점교육방향은 수사개시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수사기법 심층연구, 범죄추세 분석·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제고 및 국과수 실습·각종실습실 활용 등 실습위주로 연간 320여명(경위이하)을 대상으로 4주간(28과목, 152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⁸⁷⁾ 법의감식분야에 해당하는 법의학(5시간), 지문채취기법 실습(8), 족적채취 및 감식 실습(4), 현장감식(초동수사, 10), 국과수 현장실습(4)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V. 외국의 법의학·감식교육 및 수사직무 교육실태

본항에서는 각국의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범죄수사」관련 강좌의

84) 경찰청, 「2003년도경찰교육훈련계획」, 110면 이하.

85) 소양교과 3과목·6 시간(8%), 직무분야 10과목(75%) 및 기타 3과목이다.

86) 경찰청, 「2003년도경찰교육훈련계획」, 98면 이하.

87) 소양교과 5과목·16시간(11%), 직무 및 기타 23 과목·136 시간(73%)이다. 구체적인 직무분야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법의학 2. 탐문수사 3. 절도범수사 4. 폭력사범수사 5. 강력사건수사 6. 지문 채취기법 실습 7. 족적 채취 및 감식 실습 8. 범죄조사분석(의물착오) 9. 현장감식(초동수사) 10. 민형사관련 사건(판례) 11. 폭력피해자 및 불량청소년 상담기법 12. 수법·공조수사 13. 조사기법 및 수사서류작성 14.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15. 수사자료표 작성요령 16. 통신추적수사 17. 성폭력수사 및 인권 18. 직무사례 세미나 19. 국과수 현장실습 20. 형사법정, 교도소 견학 등이다.

규모와 전문화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독일경찰 사례

독일의 경우, 警察權(Polizeigewalt)과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에 대한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각주의 관할사항이다.⁸⁸⁾ 각주에서는 독자적인 경찰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경찰조직과 교육, 인사문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관의 입직경로는 순경급, 경위급 및 경정급(Polizeirat)⁸⁹⁾ 신규임용과정으로 대별된다.

1) 기본교육과정에서의 수사직무교육

(1) 순경급 기본교육과정

순경급 신규채용시 기본 교육기간의 경우, 각주별로 기간의 長短이 있으나 평균 약 30개월 정도이다.⁹⁰⁾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경찰의 경우,⁹¹⁾ 순경급

기본교육기간은 30개월이며, 同기간 중 6개월간의 실습이 병행된다. 교육기간 중, 범죄수사학(Kriminalistik), 과학수사방법론(Kriminaltechnik), 범죄전략론(Kriminaltaktik), 범죄학(Kriminologie)관련 수업 및 실습은 약 308시간 정도 각각 실시된다.⁹²⁾

(2) 경위급 신규채용시 기본교육과정 - 경찰대학과정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대학의 사례를 들면, 인문계 고등학교(Gymnasium)를 졸업하고 경찰대학생으로 선발되면, 약 54개월간의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범죄수사학 관련 수업은 일반경찰 지원자 313시간·수사경찰 지원자 532시간, 심리학 220시간 정도이다.⁹³⁾

88) Art. 30. Grundgesetz: Funktion der Lander: Art. 70 GG: Gesetzgebung des Bundes und Lander.

89) 내부승진자 및 사법시험합격자(Juristen)들로 이루어진다.

90) Rupprecht (Hrsg.), Polizei Lexikon, 2. Aufl., 1995, pp. 356-357. 브란덴부르크: 30개월, 베를린: 36개월, 바덴-뷔르템베르크: 30개월, 바이에른: 32개월, 브레멘: 30개월, 헤센: 30개월, 함부르크: 30개월, 맥클렌부르크-포모어른: 30개월, 니더작센: 30개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0개월, 라인란트-팔츠: 24개월, 쉴레스비히-홀슈타인: 36개월, 자라란트: 33개월, 작센: 24개월, 작센-안할트: 30개월, 튀링겐: 24개월, 연방경찰: 30개월.

91) 1998년말 현재,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는 인구는 10,400,000여명, 면적은 35,000km², 경찰관은 약 27,000여명, 기타직원 약 8,000여명이다. 1997년말 현재 총범죄발생건수(교통과실범, 국가적법익침해사범 제외)는 598,647건이다.

92) 임준태, "독일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호」, 1999, 120면. 기본교육 및 1, 2단계의 심화과정 18개월 동안 실무 및 이론강의가 총 2,816시간 정도 실시된다.

93) 기동경찰국, 州경찰학교의 24개월간 기본교육 과정 및 경찰대학 30개월 교육기간 중 이론 및 실무강의는 총 4,008시간 정도이다. 물론 실습교육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독일경찰의 경우,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에 대한 이론강의가 많이 실시되고 있는 바,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이 많다.

2) 일반대학 및 경찰교육기관에서의 법의감식 교육

(1) 대학교육과정에서의 법의감식 교육

독일에서는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에서 법의감식 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항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⁹⁴⁾

① 법과대학의 법의학관련 강좌

바덴-뷔르템베르크주내에 있는 Freiburg 법과대학의 경우, 범죄수사학(2학점),⁹⁵⁾ 법의학(2학점), 의료법(Medizinrecht, 2학점) 그리고 법의정신병학(forensische Psychiatrie) 강좌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⁹⁶⁾

하이델베르크법과대학에서는 동의과 대학 법의학연구소 소장인 Mattern교수가 진행하는 법의학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② 의과대학의 법의학연구소 등

㉠ Freiburg 의과대학

푸라이부르그 의과대학의 법의학 강좌는 1755년부터 정식강좌로 정착되었으며, 1942년 처음으로 독립적인 법의학 연구를 위한 「법의학연구소」가 설치되었다.

현재에는 1989년부터 Stefan POLLAK 박사가 법의학강좌 담당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⁹⁷⁾

同연구소에는 4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바, 법의병리학과,⁹⁸⁾ 법독성학과,⁹⁹⁾ 법의증거학 및 친생자감정과¹⁰⁰⁾ 그리고 초본약물 및 초본마약과(Pflanzliche Drogen/Herbal Drugs) 등이다.¹⁰¹⁾

㉡ Heidelberg(하이델베르그) 의과대학

동의과대학에는 「법의학 및 교통의학연구소

94) 바덴-뷔르템베르크주내에는 Heidelberg, Ulm, Freiburg, Tuebing, Karlsruhe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으며, 4곳에는 법의학연구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동주에는 60-80여명의법의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함. 한편 同州는 인구 10,475,392명(2000년 1월 기준)명, 면적은 35,000km²이다. 연간 범죄발생건수는 564, 547건이다(2000년 12월 기준).

95) 범죄학교수 또는 Freiburg 지방경찰청 부장검사가 동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96) Stefan Pollak는 법의학(<http://www.jura.uni-freiburg.de/fs/alt/files/kvv/kvvs962.htm>), H. Kindt는 법의정신병학(<http://www.jura.uni-freiburg.de/fs/alt/files/kvv/kvvs962.htm>)을 담당하고 있다.

97) <http://www.uniklinik-freiburg.de/i/rme/de/auw/index.xml>.

98)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자연사 그리고 사인불명 사체에 대한 부검(Obduktion)과 임상법의학 측면에서 상해·어린이학대·성범죄 피해자 신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다. 범죄현장 및 현장보존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6명의 법의관 및 연구소장인 Pollak 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99) 응급성 독물, 血中 알콜분석, 법의학적 관점에서 혈액·소변·모발 등에 잔류하고 있는 독성물질분석(의약품, 마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3명의 법의관이 근무하고 있다.

100) 생물학적 증거(혈액, 타액, 정액 등), 법의유전자분석(DNA-Analytik), 친생자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명의 법의관이 근무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DNA분석 및 감정시설(DNA-Data Bank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각급 의과대학 연구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증거물을 경찰이 동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101) <http://www.uniklinik-freiburg.de/i/rme/de/auw/index.xml>.

(Institut fuer Rechtsund Verkehrsmedizin)」가 설치되어 있다. 同연구소에는 의학, 화학, 약학, 심리학, 생물학, 물리학, 공학 그리고 의료정보학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 15명과 3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¹⁰²⁾

특히 법적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회복에 관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가, 의사 및 응급구조원 및 경찰관들을 위한 기본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¹⁰³⁾ 6명의 법의관(소장 포함)이 연간 400여건의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¹⁰⁴⁾

주요 임무(Hauptaufgabe)는 부검,¹⁰⁵⁾ 조직학, 면역조직화학적 그리고 독성학적 분석과 외상학적 재구성 등을 통한 사인불명 및 자살, 독살 특히 급사)이다.

그리고 중독사 의심환자, 사인불명 사망사건 및 자동차에 의한 충격사건, 불법 행위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예를 들면, 알콜, 약물 그리고 불법마약) 등에 독성학적 분석, 외부기관과의 법독성학적 분석을 위한 연구

시도이다.

여러 대의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 확인을 위한 교통의학적 조사 또는 교통사고 용의자에게 영향을 미친 질병, 필요한 약물의 오남용 그리고 알콜,¹⁰⁶⁾ 약물 및 불법마약의 중독과 같은 것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임상분야간의 학제적 협력이다.

논란이 된 친생자관계의 감정, 형사 사건 및 법적 분쟁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개인식별을 위한 미량의 혈흔, 분비물, 피부, 모발 혹은 영업상의 증거에 대한 혈청 및 법유전학적 조사이다. 기계적 하중에 의한 잠재손상의 판단을 위한 사고 재현과 외상적 분석 등이다.

102) <http://www.med.uni-heidelberg.de/einrichtungen/rechtsmedizin/index.html>.

103) 하이델베르크 법의학연구소 펠소장인 Ingo Pedal박사에 의하면, 법의병리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은 5년간의 일반의학과과정을 마친 후 1년간의 병리학을 공부한다. 그동안 6개월간 법의학교육을 받는다고 함.

104) 하이델베르크 법의학연구소 W. Reichert박사와 대담한 내용이다. 동인은 유전자감식 전문가이다. 2003년 1.1.부터 8월 5일까지 238건의 부검이 실시되었다. 필자가 同연구소를 방문할 당시 2건의 부검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부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찰에서 지급하며, 일반증거물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찰에서 지급한다고 함.

105) 독일에서는 부검은 법의학 전공(법의병리학, Rechtspathologie)의사들에 의해서 실시된다.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에서는 유전자, 혈액, 독극물, 약물에 대한 분석을 한다. 한편 州범죄수사국(LKA)에서는 의학분야를 제외한 생물, 이화학, 물리적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바, 주로 총기류, 문서감정, 지문, 족흔적·공구흔 등을 감정한다.

106) 필자가 대담한 Georg Schmidt 박사(독물분석학)에 의하면, 연간 5,000-6,000여건 정도의 혈중 알콜 관련사건을 감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전역에는 약 400여명의 독성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함.

〈표 3〉 하이델베르크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조직¹⁰⁷⁾

Forensische Pathologie 법의병리학과	Forensische Toxikologie 법독물학과	Forensische Genetik Serologie 법유전 및 법혈청학과	Verkehrsmedi- -zin 교통의학과	Exp.u. forens. Biomechanik 법의생물공학학과	Unfallfor- schung 사고조사과	Medizinische Informatik 의료정보학과
소장 Rainer Mattern Prof. Dr. med.	Rolf Aderjan Prof.Dr.rer.nat. Dipl.-Chem.	Walter Reichert Dr.rer.nat. Dipl.-Biol.	Hans Th. Haffner Prof. Dr. med.	Dimitrios Kallieris Prof. Dr. rer. nat Dipl.- Phys.	Florian Schuler Dipl.-Ing.	Falk Gaus Dipl.-Inf. Med.
부소장 Ingo Pedal Prof.Dr.med.	Georg Schmitt Dr. rer. nat Dipl.-Chem.	Ulrike Prufer MTA	Peter Strohbeck Dr.sc,hum. Dipl.Psych.	Hans Riedl Dr.rer. nat Dipl.- Phys.		
Gisela Zimmer Dr.med.	Gisela Skopp Apothekerin Dr. rer. nat.	Angelika Sulzmann MTA	Christiane Thieme Dipl.-Psych.	Bernd von Wiren Programmierer		
Kirsten M. Stein Dr.med.	Beate Lutz Dr. sc. hum. Apothekerin		Andreas Schuff Dr. med.			
Achim Schmidt Sektionsgehilfe	Christine Meyer Ltd. CTA					
Christian Weigl Sektionsgehilfe	Regine Hambeck CTA					
Ralf Bartsch Sektionsgehilfe	Isolde Harle CTA					
Cornelia Geißler- Wetzel MTA	Erika Nadler Chemielaborantin					
	Beate Neureither CTA					
	Monika Scheitz Arzthelferin					
	Ute Tremmel CTA					
	Matthias Wesche CTA					
	Sandra Wolf CTA					

107) <http://www.med.uni-heidelberg.de/rechtmed/organigr.htm>.

3) 수사경찰 전문화 과정에서의 범의감식 교육

바덴-뷔르템베르크州경찰에서는¹⁰⁸⁾ 일반 예방경찰(Schutzpolizei, 방범, 교통, 경비 등)이 수사경찰(Kriminalpolizei)로 警科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사전문화 교육(Einfuehrungsfortbildung)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내무부령(§23 Absatz 1 und 2 LVOPol)¹⁰⁹⁾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州범죄수사국(Landeskriminalamt)¹¹⁰⁾ 및 지방경찰청, 州경찰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의 중점은 형사당직반, 범의감식반 및 수사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과정은 순경급-경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총 29주간(7개월 1주)동안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¹¹¹⁾

- 실습 및 세미나 교육 5개월
- ▷ 다음 5군데 실무수사 부서에서 3개월간 이루어진다:
 - 강력범죄반(Kapitaldelikte, 살인, 강도): 4주간

- 마약범죄수사반 : 2주간
- 성범죄수사반 : 2주간
- 과학수사기법 및 범의감식(Kriminaltechnik): 3주간
- 범죄수사정보관리·서류작성: 1주간.

▷ 나머지 2개월 동안은

경찰수사정보관리시스템, 증거보전, 현장사진촬영, 감식근무 및 활동, 검시 및 부검관련 업무, 지역에 맞는 범죄예방활동, 범죄자별 특수분야 교육이 분야별 최소한 1주씩 실시된다. 그리고 나서 개별경찰관들의 적성, 흥미, 인적 특성에 따라 혹은 해당경찰관서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경찰관들을 각 분야별로 선발한다.

○ 심화교육과정 2개월

사례별 교육이 이루어지며,¹¹²⁾ 1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강의, 토론, 팀 및 그룹별 활동, 훈련 및 연습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독일경찰은 수사

108) 이하 자료는 필자가 Heidelberg경찰서를 방문, 수사경찰부서에서 입수한 공문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다. Heidelberg 경찰서에는 1,13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바, 그중에서 230명은 수사경찰관, 900여명은 일반예방경찰이라고 한다. 특히 수사경찰관은 전원 경위급 이상의 간부경찰관이며, 일반예방경찰의 경우 경위급 간부경찰관이 50%이라고 한다.

109) Polizei-Laufbahnverordnung의 약자.

110)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우리나라 대검찰청내 설치된 감정부서와 같은 조직이 독일경찰에는 없다.

111) • 기본안내교육(Grundseminar, 1주): 州경찰학교에서 실시
 • 실습세미나(Praxisseminar, 5개월): 州범죄수사국 및 지방경찰청수사부서
 • 심화교육(Aufbauseminar, 2개월): 州경찰학교에서 실시.

112) 사례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검시업무, 마약범죄, 실종자수색, 성범죄, 화재사건 및 최근 범죄유형들. 그리고 종합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人的증거, 과학수사기법, 전산업무, 위장수사, 범죄자 및 범죄지향적 수사, 범죄대책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갈등처리 및 위기관리 개입, 예방 및 종합적 과제 등이다.

전문화 교육과정을 통해 최소한 9-10주 정도는 과학수사기법, 범죄감식, 증거보전 그리고 현장사진촬영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한편,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전문화교육은 짧게는 14일에서 10주에 이른다고 한다.

2. 스위스경찰 사례

1) 바젤주 경찰(Polizei-Baselland)

순경후보생(Polizeiaspirant)들은 경찰 학교에서 15개월간(1,494시간 이론교육, 19주의 실습교육)간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는다. 범죄수사전략론 74시간, 범죄수사학 37시간과 10시간의 범죄학 수업이 이루어진다.

2) 베른주 경찰(Kantonspolizei-Bern)

순경급 신규임용 교육기간은 15개월(2,535시간)이다. 교육기간 중 26시간의 범죄수사전략론, 76시간의 범죄수사학, 12시간의 과학수사론 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3) 기타 州경찰

스위스의 8개 市 및 州경찰(Luzern Stadt,

Luzern Kanton, Zug Stadt, Zug Kanton 등)의 경찰관 양성을 위한 연합 경찰교육기관인 스위스 중앙경찰학교(Zentralsch weizerische Polizeischule)에서의 교육기간은 12개월(1,026시간)정도이다. 범죄수사전략론 및 범죄수사기법론이 160시간 정도 교육된다.¹¹³⁾

3. 캐나다경찰 사례

1) 기본교육과정에서의 수사직무교육

연방경찰(RCMP)의 순경급 신규 교육과정은 22주이다. 동기간 수료 후에 경찰관으로 임명을 받고, 6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Ontario州의 순경급 기본교육은 17주이며, 시보기간은 12개월이다. British Columbia州 경찰학교에서는 밴쿠버시를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 동순경급 기본교육과정은 9개월 정도(35주)이다.

(1)연방경찰 사례

연방경찰 순경급 기본교육의 주요 내용은 문서작성, 응급처치, 피의자호송, 무전기사용, 경찰견관리, 범죄수사분야(폭발물수사, 현장보존, 범죄수사 실험실 운용, 지문채취,

113) URL:<http://www.zsps.ch> 2000.08.02.

사진촬영기법, 화재현장 수사 등),¹¹⁴⁾ 호신술, 경찰역사 법률분야(형법 및 연방법규), 추적운전기법, 사격술 및 총기류 조작, 체력단련, 수영, 인간관계, 문화적 다양성, 인간행동과 경찰개입 등에 관한 내용이다.¹¹⁵⁾

(2) **브리티쉬 컬럼비아주 경찰학교 사례**

British Columbia주 경찰학교에서는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지 않은 州內 11개 지방자치경찰관서의 경찰관 신규임용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순경급 신규 교육과정(35주)의 주요 교육분야는 법률(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연방법규)분야 15.6%, 범죄수사 및 순찰기법분야 16.6%,¹¹⁶⁾ 의사소통기법, 피의자체포관련 내용, 추적운전연습, 도로교통법규 및 사고조사요령, 사격술 및 화기류조작, 체력단련 등이다.

2) **일반대학 및 경찰교육기관에서의 법의감식 교육**

일반대학 및 전문직업교육기관에서도 법의감식교육이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경찰대학(Police College in Ottawa) 및 연방경찰학교(Training Academy in

Saskatchewan)에서도 법의감식 분야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1) **일반대학 및 직업교육기관(BCIT)의 법의감식 교육**

① 토론토대학교의 법과학부(Forensic Science Program University of Toronto at Mississauga)

同대학에서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법과학전공 및 부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과학부에서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¹¹⁷⁾

- 1학년 : 화학분야(The Study of Matter and Its Transformations)
- 2학년 : 생물학분야(Introduction to Physiology, Intro Cell & Molecular Biology, Introductory Genetics, Lab in Molecular Biology & Genetics), 법과학(Forensic Science), 윤리와 법률(Ethics and the Law),
- 3학년 : 인류학(Human Osteology), 곤충학(Entomology), 법곤충학(Forensic Entomology), 통계학(Statistics), 통계학의 응용(Application of Statistics), 생물공학(Biometrics I, II),
- 4학년 : 법과학에서의 멘토쉽(Mentorship)

114) Identification services: Bombs and infernal devices, Crime Scene protection, Crime detection laboratories, Plan drawing, Fingerprinting, Photography, Personal descriptions, Identification services, Fire scene investigations.

115) 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p. 81.

116) Investigation & Patrol 직무관련 내용이 132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다.

117) <http://www.erin.utoronto.ca/~w3fsc/DoubleMajorProgram.htm>. 수료자에게는 이학사(Bache- lor of Science)를 수여한다.

in Forensic Science).

법과학부에서는 인류학(Anthropology), 생물학(Biology), 화학(Chemistry) 그리고 심리학(Psychology)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¹¹⁸⁾ 학생들에게 인류학, 생물학, 화학, 컴퓨터공학 및 심리학을副전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싸이먼 프레저대학교 범죄학부(School of Criminology at Simon Fraser Uni.)

Gail S. Anderson(女)교수¹¹⁹⁾ 및 N. Hobischak이 진행하는 법과학 강좌가 있다. 법과학은 형사사법에서 과학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Anderson 교수는 법의곤충학을 전공한 者로서,¹²⁰⁾ 법의학, 의학, 獸醫學 그리고 곤충학(entomology), Criminal Profiling, 법심리학, 범죄생물학 그리고 「법과학의 발전된 기법」을 강의하고 있다.¹²¹⁾

③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BCIT)

과학수사(Forensic Investigation)에 관한 學士 학위는 1997년도에 BCIT(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던 고급 전문자격프로그램

(Advanced Specialty Certificate Program)의 성공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이 學位의 목적은 과학수사에 관한 특수화된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사능력과 이론적인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同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은 법과학, 경제 범죄 및 컴퓨터 범죄분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¹²²⁾

▷법과학전공 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학생들의 학문적 배경과 업무경험에 따라 수사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 과학기술자, 분석가 혹은 (상급학위가 있는)법과학연구소의 과학자
- 경찰관(즉, 법의감식 분야)
- 검시관(Coroner)

▷경제범죄 및 컴퓨터 범죄를 전공한 사람은 전문가들이 상업적인 범죄와 컴퓨터 범죄수사와 예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수사(관련)업무에 종사하게 된다.¹²³⁾

118) <http://www.erin.utoronto.ca/~w3fsc/>

119) 필자는 2004년 8월경 Simon Faser Uni.에서 연구할 때, 同교수를 면담한 바 있다.

120) <http://www.sfu.ca/criminology/facstaff.htm>.

121) <http://www.sfu.ca/criminology/Ofs033.html>.

122) http://programs.bcit.ca/program.php3?program=pt_btech_comp_02.

123) 경찰수사관, 지방경찰 수사관, 관리인, 법인경비회사, 네트워크의 안전관리인, 위험 관리인, 내부 감사관, 손실보상청구 조사관,

한편, 同공과대학(BCIT)에서는 법과학 기법(Forensic Science Technology)에 대해서 부분전공(Parttime Studies Course) 할 수 있도록 2003년 가을학기에 무려 41개 관련분야 강좌를 개설한 바 있다.¹²⁴⁾ 특히 범죠헌장수사, 법과학입문, 법행동과학(Forensic Behavioural Science), 법의병리학 그리고 지문감식의 원칙과 방법론(Principles and Methods in Fingerprint Identification)강좌는 주목할만하다.

BCIT에서는 과학수사학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2년 동안(이수학점 60) 그러한 종류와 같은 상위 수준의 Course-Work을 제공한다.¹²⁵⁾

(2) 수사경찰 전문화 과정에서의 법의감식 교육

① 연방경찰대학과정(Canadian Police College at Ottawa)

연방경찰대학의 경찰학부(Police Science School)는 경찰관들에게 전문화된 실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컴퓨터범죄를 포함한 범죠퓌사관들과 폭발물, 교통사고 및 법의감식전문가들을 위한 과정이다. 同과정은 캐나다 경찰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찰관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명성이 높은 교관진, 소수정예, 우수한 교관/학생들, 훌륭한 시설 그리고 실천위주의 경험학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¹²⁶⁾

▷ 운용중인 수사전문화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폭발물처리, 교통사고조사,
- 수사전문화과정(중요사건관리 및 수사, 정보분석, 위기상황, 경찰보안지도과정, ViCLAS과정, 거짓말탐지기과정),
- 법의감식(법의감식과정, 혈흔감식, 지문분류),
- 컴퓨터이용 범죠퓌사기법(technological

법의학적 회계사, 보안 조사관, 민간경비/수사실무가 등이다.

124) http://courses.bcit.ca/list.php3?subj_codes%5B%5D=FSCT.- Crime and Science Seminar:Chemistry for Forensic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Concepts For Forensic Investigation 1,2; Drug Recognition Expert Course 2; Criminal Law 1: Legal Procedures; Criminal Law 2: Legal Evidence; Science, Technology and the Law; Introduction to Commercial Crimes in Canada; Introduction to Computer Crime Studies; Crime Scene Investigation; Introduction to Forensic Science; Forensic Behavioural Science; Forensic Pathology; Forensic Biology: DNA Typing; Forensic Biology: Advanced Molecular Techniques; Explosive and Fire Accelerants; Trace Chemical Evidence; The Medicolegal Aspects of Alcohol; Drug Identification and Toxicology; Drug Analysis; Principles and Methods in Fingerprint Identification; Forensic Photography; CCTV and Forensic Examination; Forensic Imaging Techniques; Loss Prevention and Risk Management; Commercial Crime Investigative Techniques; Tactical Analysis 1; Introduction to Intelligence; Forensic Accounting 1; Investigation of Insurance Fraud 1; Forensic Accounting 2; Tactical Analysis 2; Internet for Investigation; Law for Computer and IT Professionals; Computer Security Networks 1; Computer Forensics; Encryption; Graduation Project/Internship 1; Graduation Project/Internship 2; Graduation Project/Internship 3.

125) http://programs.bcit.ca/program.php3?program=pt_btech_comp_02.

126) http://www.cpc.gc.ca/scienc_e.htm.

crime learning institute, 컴퓨터상의
수색 및 압수, 인터넷압수, 네트워크를
위한 수사기법, 사이버범죄),

- 원격교육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이다.

▷또한 법의감식 전문화교육과정을 상세
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²⁷⁾

㉠ 법의감식분야(Forensic Identification: FIC)

同교육과정은 10년정도 경찰경력이 있는
者를 대상으로, 33일간(월-금, 8주) 20명에게
실시된다. 同과정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증거를
인식, 수집, 조사, 촬영, 보존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킨다.¹²⁸⁾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⁹⁾

- 지문감식업무(Fingerprints, 양적, 질적
마찰용선 분석): 마찰, 피부구조, 지문
패턴, 인식지문비교, 지문분석리포트,
장문(掌紋)비교.
- 사진촬영기법(Photography): 필름의
적절한 노출, 플래쉬사용한 촬영, 디지털
이미지(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포함)활용, 복사입문, 범죄

현장촬영, 지문촬영, 작은 물체 촬영,
확대촬영, 음화(陰晝)의 평가, 필터사용,
원근투시법활용, 법의광선(자외선 등).

- 범죄현장감식(Crime Scene): 분말 및
화학약품, 현장약도, 물리적 증거,
2차원적 흔적, 3차원적 증거복원, 자동차
및 타이어흔적, 범죄현장 접근 및 진행,
DNA 증거, 비디오카메라입문, 혈흔
패턴인식, Criminal Profiling, Virtual
Reality(가상현실), 주요사건 발표,
법의병리학.
- 전문감정가의 조언(Expert Advice):
비교차트, 전문감정의 준비 및 발표,
모의재판.

한편, 고급과정(Senior Forensic Identification)은
법의감식 기본과정을 이수한 者를 대상으로
현장감식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찰관들에게¹³⁰⁾
10일간의 추가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同과정의 목적은 증거의 인식, 수집, 조사
그리고 제출에 관한 감식전문가로서의 기량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다. 법의감식 전문가들과
현장의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한 과정이다.
교육내용은 법인류학, 법곤충학, 법의타이어

127) http://www.cpc.gc.ca/sciences/ficour_e.htm

128) 교육종료시점에는 지문대조실무, 사진촬영이론, 범죄현장감식이론 및 범죄현장실무에 관한 내용으로 시험(70점 이상)을 치러야 한다.

129)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fic_e.htm.

130) 기본 감식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그와 동등한 교육(사진촬영, 지문감식,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증거에 대한 수집·감식·보전 그리고 제출을 포함한 현장감식 등)을 수료한 者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감식전문가로서 3-10년정도 정식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교육생들은 현장(젓은 잔디, 진흙 등)에 나갈 때에는 특수한 복장을 해야 하며, 1개반은 보통 20명 정원이다.

흔감식, 법치과학, 지문학, 지문과 물리적 증거에 관한 신기법 혈흔패턴의 이해, 선별된 주제들이다.¹³¹⁾

㉞ 혈흔감식과정

기본혈흔패턴 인식(Basic Bloodstain Pattern Recognition: BBPRC) 과정인데, 법의감식 기본과정을 이수한 者를 대상 (18명)으로 5일간 실시된다.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잔류 혈흔의 모든 형태를 전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법의감식 전문가 양성과정이다.¹³²⁾ 교육내용은 혈흔 패턴이론, 혈흔패턴의 촬영, 투사된 혈흔 패턴의 분석, 사건평가, 범죄현장의 再구성, 실습, 혈흔분석에 관한 기본수학 및 물리학개론, 혈흔패턴에 관한 컴퓨터분석 입문, 실습훈련: 실험 및 모의범죄현장, 필기 및 실기시험 등이다.

㉟ 지문분류과정(Henry Fingerprint Classification: HFCC)

Henry式 분류방식을 사용하여 지문을 분류하기 위하여 고용된 혹은 고용예정인 者들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으로서, 5일동안 실시된다. 지문이론, 헨리식 지문분류법 그리고 지문용선학 (ridgeology) 등이 교육된다.¹³³⁾

▷ 법의감식 초보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연방경찰대학 법의감식연구센터(Forensic Identification Research Services)에서는 48개월 과정의 법의감식 초보자훈련과정을 통해 인증된 “법의감식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同연구센터는 감식기법과 장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¹³⁴⁾

〈표 4〉 캐나다 연방경찰의 법의감식전문가 양성과정(48개월)³³⁵⁾

Pre-Course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7개월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감식직무에 흥미 혹은 직업부합성 여부 판단 • 후보자사전확인 • 3주간적합성평가 • 승인취득 및 조건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간시작 할당된 감식부서로 효과적인 배치 • 부과된 교재연구시작 • 지문대조훈련시작 • 부과된 다른 훈련 / 절차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대조과정 • 다른 수업, 실습 및 훈련계속 • 감독자임명하에 捜査개시 • 실험실에 친숙하기 (교육실시 1개월과 자격심사기간중 어느때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험 실시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捜査계속 • 연구프로젝트개시 (교육개시 1개월에서 자격심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최소한 5개 프로젝트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捜査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捜査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시험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捜査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捜査계속
8개월차	9개월차	10개월차	11개월차	12/13개월차	14~20개월차	14~48개월차	On-Go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捜査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시험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捜査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捜査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대조최종시험 • 자격심사요청 • 자격심사를 위한 준비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捜査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捜査계속 • 자격심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하다면, 처음시도한지 6개월 이내에 자격심사 반복 • 필요할 때, 추가수업, 실습과 훈련실시 • 감독자의 임명하에 수사실행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필요한 법의감식훈련 완성, 경험있는 법의감식전문가의 지도하에 사건수사 실행 • 승인절차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법의감식요원들을 위하여 계속적인 학습을 강하게 격려하기. • 추천된 과정을 위한 FIAT 프로그램가이드 참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훈련(Modular Training)

모듈(Module)은 필수적·실무적인 것과 연구과제들을 읽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모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지문과 사진 증거에 관한 권한들(Authorities Fingerprint and Photograph)
- 흑백필름(Black and White Film)
- 사진기 렌즈(The Lens)
- 조명에 관한 이론(Theory of Light)
- 35mm 카메라에 대한 소개(Introduction to the 35mm Camera)
- 현장의 깊이(Depth of Field)
- 디지털 이미징(Digital Imaging)
- 물적 증거의 유형들(Types of Physical Evidence)
- 작업장의 위험한 물체들에 관한 정보(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 지문에 관한 이론(Fingerprint Theory)

자동분류시스템(Printtrak)에 기반을 둔 지문유형인식을 제공한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주제들도 교육의 대상이다.

- 마찰융선분석(Friction Ridge Analysis)
- 지문 대조(Fingerprint Comparisons)¹³⁶⁾

• 지문의 역사 (Fingerprint History)	• 피부조직(Structure of the Skin)
• 능선학(Ridgeology)	• 다공검사법(poroscopy)
• 땀의 구성(Compositon of the sweat)	•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측정(Digit Determination)
• 지문대조(Fingerprint Comparision)	• 보고서 작성(Report Writing)

131)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sfic_e.htm.

132)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bbprc_e.htm

133)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hfcc_e.htm

134) http://www.rcmp.ca/firs/fiatp_e.htm.

135) 필자가 캐나다 연방경찰 VICLAS 전문수사관을 통하여 입수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

㉔ 사진에 관한 이론(Photographic Theory)

사진이론은 다음과 같은 주제아래 교육이 이루어진다.

• 사진 화학물질(Photographic chemicals)	• 복사하기(Copying)	• 필름의 관리와 보관(Care and handling of films)
• 디지털 이미징(Digital Imaging)	• 사진컬러의 온도(Colour temperature)	• B&W 여과법(B&W Filtration)
• 부정적인 평가(Negative evaluation)	• 사진기 누르는 과정(Push Processing)	• 플래쉬 조명(Flash illumination)
• 작은 물체의 사진촬영(Small Object Photography)	• 야간사진촬영	• 증거물의 사진촬영(Evidential photography)
• 자외선·적외선 사진촬영(Ultraviolet and Infrared Photography)	• 노출 측정기(Exposure Meters)	• 투시화법(Perspective)

㉕ 실무적 사진촬영(Practical Photography)

개별 교육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진도구와 기법들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진 일련의 실무적인 연습을 완수해야 한다(75%). 각교육생들은 실제적인 범죄현장조사동안 필요한 5가지의 사진기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진촬영들은 적절한 노출량(exposure), 구성(composition), 과정(processing), 청결(cleanliness)에 대해 평가한다(25%).

㉖ 범죄현장에 관한 이론(Crime Scene Theory)

범죄현장이론에 관한 시험을 치른다. 교육생들은 범죄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의학·감식 수사관에 의해 행해진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받는다.

- 법적·과학적 연계(Legal and scientific implications)
- 증거 도표들(Evidence charts)
- 사체에 관한 신원확인(Identification of the deceased)
- 범죄현장의 위생과 보전(Crime scene health and safety)
- 파우더와 화학물질을 이용한 지문감별(Detection of fingerprints powders and chemicals)
- 사체의 지문채취와 적절한 관리(Fingerprinting and proper handling of cadavers)
- 거시적인 사진촬영의 소개(Introduction to macro photography)
- 자동차 타이어 대조와 식별(Vehicle tire comparison and identification)
- 증거물의 탐색·인식·수집·관리(Search, recognition, collection and handling of exhibits)
- 2차원·3차원적 흔적들의 발견과 식별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f two and three dimensional impressions)
- 범죄현장의 보호와 기록(Protection and recording of the scene)

136) 심사를 받을 때, 개별 교육생들은 모의범죄현장에 남겨져 있던 지문 10개 중 최소한 7개를 정확하게 식별해 낼 수 있도록 요구되어진다. 모의범죄현장의 지문들은 30개의 잠재지문들 중 하나만 채집해내도록 요구된다. 이 대조심사에 대한 준비로서,

- 감정가의 증언에 관한 소개
(Presentation of expert evidence)
- 지문사진촬영(Fingerprint photography)
- 혈흔유형해석(Bloodstain pattern interpretation)
- 물은 자국(Bite marks)
- 계획 설계(Scale plan drawing)
- 범죄현장비디오 입문
(Introduction to crime scene video)
- DNA의 채집과 처리과정
(DNA Collection and Processing)

연방경찰의 법의감식훈련프로그램 (Forensic Identification Apprentice Training Program)은 법과학적 수사에 있어서 능력있는 신뢰할만한 실무가들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을 경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경찰관들에게는 「공인법의

감식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공인법의감식전문가」들은 아주 뛰어난 수준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전문가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생들은 반드시 그들의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¹³⁷⁾

(2) 연방경찰학교과정(Training Academy)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연방경찰(RCMP)은¹³⁸⁾ 수사경찰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4년부터 연방경찰 학교에서 「캐나다법집행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³⁹⁾ 현재까지 5,000여명의 연방, 주 및 지방자치체 경찰관들이 관련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심지어는 스페인, 하이티, 호주, 미국의 법집행공무원들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¹⁴⁰⁾

특히 집중화된 훈련과정에 포함된 법과학

각 교육생들은 최소한 모의범죄현장의 100개의 지문들을 찾고, 비교하여 정확하게 식별해내야 한다. 교육생들의 교육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모니터링 되며, 대조시험과 함께 완결된다.

- 137) • 연구, 테스트 그리고 과학적 자료들의 평가
- 최근의 지문자동확인시스템에 부응할 수 있는 지문패턴의 확인
 - 범죄현장분석
 - 분석할 모든 형태의 법의감식적 증거를 수색하고, 이해하고 발견하기
 - 증거추적을 위하여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현출하기
 - 지문증거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확인하기
 - 물리적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확인하기
 - 사진촬영 및 측정을 통하여 증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 법과학적 실험분석을 위하여 증거를 수색하고 인식하고 발견하기
 - 기술적 증거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 증거서로서 제출될 수 있도록 차트, 그림 그리고 사진형태로 증거를 제시할 준비하기
 - 지문과 물리적 증거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기.

138)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의 약자.

139)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

일반법집행과정(General Law Enforcement Courses), 토착원주민(인디언)대상 경찰활동과정(Aboriginal Policing Courses), 전문운전훈련과정, 무기사용훈련과정, 방어전술과정(Defensive Tactics Courses), 연습 및 훈련과정, 전입자 기술훈련과정(Transferable Skills Courses), 집중화된 훈련과정(Centralized Training Courses) 등이다.

전문화 과정에서는, 기본법의감식, 고급 법의감식, 법인터뷰기법들, 혈흔패턴인식, 범죄현장 비디오촬영, 형광기계활용법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5. 영국경찰 사례

본항에서는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 for Scientific Support to Crime Investigation)에서 개설한 수사 경찰관전문화 과정을 주로 소개한다.

1) 국립훈련센터 소개

국립훈련센터는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위하여 1990년 1월 1일 Har-perley Hall에 설립되었다.¹⁴⁰⁾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과학 교육현장이 되었다. 국립지문 감식훈련 프로그램은 1992년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최근에 Aykley Heads, Durham에 소재하는 Centrex 국립훈련 센터에 담당업무가 부여되었다.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전문적 기준에 대하여 꾸준한 발전과 확립을 보증하고 있다.

2002년이래 국립훈련센터는 중앙경찰훈련 및 개발부서의 일부가 되었다. 국립훈련 센터는 지금에 와서는 “Centrex NTC”로 불린다. Centrex는 직업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들과 경찰활동에 대한 발전과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된 실무적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훌륭한 경찰활동을 개념 정의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있다.¹⁴²⁾

2) 범죄현장수사관 훈련 프로그램

범죄현장 수사관 훈련프로그램은 다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¹⁴³⁾

- (이상적으로는 1개월 동안) 범죄현장에서 절차와 업무에 관한 입문. 이것은 교육생들에게 교육이 완료된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초기 9주 동안의 훈련과정에서는 사진촬영기법과 증거추적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제공한다.
- 법과학 실험실에 정식으로 방문하는 것과 더불어, 범죄수사관 자신의 힘으로 범죄현장에서 2년 동안 직무경험을

140)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Forensic.

141)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overview.html>.

142)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overview.html>.

143)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intro.html.

축적하기.

- 보다 더 발전된 기법들과 기술들을 소개해주고 범죄현장 수사관훈련과정 초기에 익힌 감각을 통하여 처리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어줄 2주간의 심화과정에 참석하기.
- 기술분야를 재평가하고 최신기술 및 수사기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새롭게 해주는 2주간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추가적으로 양적 범죄(Volume Crim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고 있는 바,

- 양적 범죄 현장수사관(Volume Crime Scene Investigators: VCSI)을 위한 3주간의 기본교육은 DNA 증거 및 지문 증거에 대해 초점을 두고,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원칙들을 다룬다.
- 양적 범죄 현장수사관들을 위한 전환배치 과정

독립적인 범죄현장수사관 수준으로 교육생들을 이끌어 주기 위하여 대량범죄

현장수사관들의 현존하는 기술들을 강화시킬 4주간의 교육과정이다.

(1) 범죄현장 초동수사관 양성과정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or)

주거침입절도, 사람에 대한 범죄,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법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범죄현장으로부터 증거를 발견하는 것과 대량범죄에 주로 강조점을 둔 채, 범죄현장수사관에게 필요한 기본기술들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증거발견에 있어서 훌륭한 실무와 Health & Safety 절차들이 또한 다루어진다.¹⁴⁴⁾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광범위한 범죄현장 조사능력, 증거발견과 이해력 강화, 증거물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범죄현장 수사관으로 새로 임명받은 경찰관 혹은 그러한 새로운 역할을 위한 수사관들을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이과정은 9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144)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1.html. 사진촬영단계: 35mm나 중간정도의 Format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범죄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신발자국, 공구흔과 다른 목적물에 관한 실체크기의 사진촬영하기; 범죄현장, 부검, 사고 및 상해에서 플래시를 사용함; 빛에 관한 어려운 조건하에서 필터를 사용하여 사진촬영 그리고 필터사용; 법원과 관련된 법률과 실무를 이해하기; 추적증거와 결부된 증거들; 계속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샘플을 정확하게 포장하고 보존한다; 증거추적과 발견 그리고 교환에 대한 원칙; 표시도구 및 족흔적의 발견; 잠재적인 생물학적 증거; 銃器를 사용한 사건과 관련된 샘플의 발견; 현장감식의 완성과 실험실 제출용 서류양식; 약물에 관한 일반적 이해; 폭발물과 관련된 일련의 시나리오를 추적하는 기본절차 이해; 범죄와 관련된 차량 조사; 증거평가; 화재사건현장조사 이해; 주요한 범죄현장 기술원칙; 지문채취용 분말사용(따편, 과립과 금속); 분말로 된 흔적의 발견; 지문촬영(이론과 실무); 기본지문이론(유형과 확인원칙들); 손가락지문과 손바닥지문의 채취(기소목적 및 제외); 사체에 대한 지문의 채취(이론); 형광기계를 이용한 조사와 화학적 강화를 위한 적당한 표면의 확인; 지문과 관련된 법률; 법정에서 증거의 준비 및 제출; 지문자료 보관부서의 기능.

(2) 범죄현장수사관을 위한 발전과정 (development crime scene investigator)

범죄수사관의 기본지식과 실무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무기류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재사건 및 현장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특별한 전문영역에 대한 수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¹⁴⁵⁾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경찰관들을 위한 것이다. 과학적 수사 지원기법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을 받아 보지 못한 범죄현장 수사관들에게도 이 과정이 제공된다. 이과정은 Durham 대학에 의해서 인증을 받으며, 2주간에 걸쳐 진행 된다.

(3) 범죄현장수사관 (활성화) 재교육과정 (refresher crime scene investigator)

최선의 실무, 건강과 안전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현장수사관들의 지식과 실무 기술들을 새롭게 하고, 향상, 발전시킴으로써, 경험있는 범죄현장수사관들을 자극하고 장려하기 위한 2주 교육과정이다.¹⁴⁶⁾ 향상 변화하는 과학적 수사 지원기법과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라는 성질 때문에, 모든 범죄현장 수사관들은 매 5년마다 이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경험이 있는 현장수사관들에게는 범죄현장 수사에 관한 Durham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통로가 된다.

(4) 양적 범죄 현장수사관 양성과정 (volume crime scene Investigator)

범죄현장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범죄현장 조사, 발견된 모든 증거의 통합유지 및 법정에 증거물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교육과정이다.¹⁴⁷⁾ 양적인 범죄 유형을 처리할 수사부서에 새로이 배치된 현장수사경찰관들을 위해서 개설된 교육 과정이며, 기간은 3주간이다.

(5) 양적 범죄 현장수사관 전환교육과정 (conversion VCSI course)

이교육과정은 3주간의(대량) 범죄현장 수사관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독립적인 범죄현장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4주간이다.¹⁴⁸⁾

145)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2.html.

146)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3.html.

147)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4.html?

• 범죄현장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을 증명;법과학적 그리고 지문증거물에 대한 확인, 발견, 포장과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증명; 법과학적 증거를 정확하게 저장하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증명하기; 복잡한 노트와 진술서를 완성하기;형사법정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지식, 신뢰 기술을 발전시키기.

3) 과학적 수사지원을 위한 관리 및 조정관 양성과정 (management and co- ordination of scientific support)

중요 사건 발생시 범죄현장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범죄현장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다.¹⁴⁸⁾ 경험이 있는 범죄현장수사관, 관리 혹은 조정자의 역할을 할 직책에서 근무할 수사관들을 위한 1주 교육과정이다.

4) 지문수사관 양성과정 (national fingerprint examiner)

동교육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바, 기본입문과정, 중급과정 및 고급과정이다.¹⁵⁰⁾

▶ 기본입문과정 (The Foundation Course)

국립지문분석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지식에 대한 훈련, 사무실업무에 관한 원칙들, 지식과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이 배치된 참모부서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4주간의 교육과정이다.¹⁵¹⁾

▶ 중급과정(The Intermediate Course)

일반적인 교육주기에 접근할 수 없는 참모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개설된 것인 바, 사무실 업무에 관한 약간의 경험, 전문가적 지위를 얻으려는 잠재적인 직원들에게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기본입문과정에 출석하는 것은 동교육과정 입학의 선행 조건이다. 참모부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며, 3주 과정이다.

▶ 고급과정(The Advanced Course)

전문가적 지위를 부여받기에 합당한 후보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목적은 법정에서 각 교육생들이 지문을 제시·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문분석전문가 양성을 위한 3주짜리 교육과정이 제공되는 바, 국립지문분석시스템 훈련, 십지지문 날인 운용자, 융선학 과정이다.

그리고 지문분석시스템과정은 지문분석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완결 교육이다. 십지지문 채취 업무자는 21~22일간이며, 지문분석수사관 과정은 41~42일간 교육을 받는다. 십지지문 채취 담당자 과정은 마찰융선, 유형의 정의,

148)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5.html.

149)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2_intro.html. 중요한 사건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필요한 부분과 우선적인 절차 평가하기;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이슈를 찾아내기; 범죄현장에서 스텝진을 지원하고, 관련된 필요사항 찾아내기; 범죄현장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기; 범죄현장에서 방침과 행동을 기록하기; 모든 오염된 것과 노출된 이슈 찾아내기.

150)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3_intro.html.

151) 지문시스템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 마찰융선에 관한 분석, 비교 그리고 평가를 포함하여 지문의 유형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 시체를 포함한 지문의 채취 및 기록할 수 있는 능력; 지문분석부서의 역할과 지문의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지식; 증거법칙과 지문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별한 법칙의 이해; 사무실업무의 기본기술과 원칙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모부서에 새로이 배치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유형의 코드화, 경찰과학사증거법(PACE) 제84조 및 국립지문분석시스템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지식을 함께 완전히 이해 하는 것이다. 2주에 걸쳐 진행된다. 융선학은 1주 과정이다.¹⁵²⁾

**5) 전문가양성과정
(specialist courses)**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잠재된 증거들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과학수사지원 참모경찰관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일반적으로 短期교육과정이다.¹⁵³⁾

**(1) 지문증거발견 및 지문기록 테크닉과정
(fingerprint evidence recovery & recording techniques)**

내무부에서 발간된 “지문현출기법과 형광

분석가이드”라는 메뉴얼에 담겨져 있는 절차상의 실무적 경험을 얻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다.¹⁵⁴⁾ 현장의 지문증거발견에 대한 경찰과학발전부서의 참모진들과 다른 인정된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2주 과정이다.

**(2) 범죄현장수사관을 위한 화재수사과정
(fire investigation for crime scene examiners)**

의심스러운 화재사건에 대한 확인과 수사를 위한 증거발견에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보다 더 확실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고용주, 법관, 심리 및 법정에서 정확한 서면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팀의 일원으로서 혹은 단독으로 화재사건현장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1주 과정이다.¹⁵⁵⁾

152)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3_intro.html.

153)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4_intro.html.

154) 모든 절차에 있어서 건강 및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조사된 증거물의 관점에서 법과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 법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지문, 사진 그리고 물리적 증거 발견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세 가지 훈련에 대한 균형각각을 발전시키기; 고강도 광시스템 사용과 아미오 블랙, 제니틴 보라, 요오드, 닐히드린 등을 포함한 향상된 기법들; 방사황산화물 및 금속처리기법에 대한 이해; 더욱 더 난해한 증거물에 대하여 전문화된 광선기법 및 사진촬영기법들에 관한 실용 지식을 얻기; 절차 및 장비와 함께 실무적 경험을 얻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155)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4_2.html. 화재이론- 화재가 번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점화 및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기본이론 과 개념에 대한 이해; 화재사건수사부서와 역할-화재현장을 수사할 수 있는 부서 혹은 사람들의 역할과 권한들을 이해하기; 어떻게 경찰이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어떻게 경찰수사절차가 그것들과 내부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지 이해하기; 화재안전-토론과 훈련을 통하여, 화재현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애물의 유형과 적절한 장비와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작업시스템을 인식하기; 화재의 영향-사례연구, 토론 및 훈련을 통하여, 물체, 구조 및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현장조사-법과학자의 지도하에 실무적인 훈련을 통하여, 실제적인 화재현장을 활용하면서 특별한 추가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해가면서, 화재발생장소 및 원인에 관하여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무에 이론을 적용시킬 능력을 발전시키기; 증거로서의 신체-내무부 소속 병리학의사와 검시관에 의한 주장을 통하여, 화재에 노출된 신체로부터 활용가능한 증거유형의 범위를 인식하고 심리에 관련된 절차를 배우기 등이다.

(3) 얼굴식별과정(facial identification)

예술가적 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법들은 E-Fit 혹은 Pro-Fit 과 같은 컴퓨터시스템의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 과정은 교육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다.¹⁵⁶⁾

범죄현장에서 얼굴 확인의 역할에 대한 수업과 증거로서 얼굴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법적 측면을 포함한다. 예술가적 기술이 제한된 초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주 과정이다.

(4) 사진촬영 고급과정 (advanced photography)

증거를 기록할 수 있는 비디오 혹은 사진 촬영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교육과정이다. 전문적인 훈련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추어진 과정이다. 기본적인 디지털 이미징 기법들이 또한 강의된다. 발전이 요구되는 기본 사진촬영 기술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된 2주 과정이다.¹⁵⁷⁾

(5) 법의검시관 훈련과정 (forensic medical examiner training)

법의검시관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임상 법의학 영역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무적인 기본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¹⁵⁸⁾ 새로이 법의검시관으로 임명된 者들을 대상으로 한 1주 과정이다. 이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법의검시관의 역할, 특별히 性的 그리고 폭력적인 공격과 관련된, 알콜, 마약과 관련된 범죄들을 이해하기
- 법정에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할 능력.

(6) 法考古學분야 전문교육과정 (forensic archaeology)

법고고학이 어떻게 범죄수사를 도와줄 수 있는 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경험있는 범죄현장수사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¹⁵⁹⁾ 범죄현장관리 기능과 함께, 경험이 있는 현장수사관들은 반드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주과정이며,

156)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4_3.html. 목격자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문제를 이해하기; 인식적인 인터뷰기법들을 결합시키는 인터뷰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스트레스문제 및 강간으로 인한 외상증후군 인식하고 이해하기; 가장 효과적인 유사얼굴을 얻기 위하여 인터뷰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의사소통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157)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4_5.html.

158)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4_6.html.

159)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4_8.html. 법고고학의 역할이해; 고고학적 기법들에 관하여 기본적인 이해; 매장물을 발견하기 위한 완전한 접근을 발전시키기; 사람의 해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 지리물리적 측정과 유물발굴에 관한 기본지식 얻기.

Birmingham 대학과 파트너십을 갖고 진행되는 강좌이다.

6) 영국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현장수사관 자질

영국경찰에서는 범죄현장수사관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들(skills required to become a crime scene investigato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범죄현장수사관의 업무라는 것은 자극적이며, 몰입할 수 있는 측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또한 종종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지저분한 일일 수 있다. 이러한 업무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지역경찰관서의 과학적 수사지원 부서로부터 관련된 업무의 유형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경찰관서들은 하루동안 적합한 인물로 하여금 해당관서의 범죄현장수사관 중의 한 요원을 따라다니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업무 유형이 개별경찰관에게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¹⁶⁰⁾

훌륭한 범죄현장수사관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관련하여, 적성은 다음과 같은 바, 완벽한 범죄현장수사관과 같은 거의 없다. 부분적으로 각 과학적 수사지원부서들은 지역경찰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약간씩 다른

업무실패와 우선순위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들은 성공적인 범죄현장수사관의 중요한 적성들 중의 일부라고 이해될 수 있다:

훌륭한 손놀림, 색맹이 아니어야 하며, 사물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눈, 방법론적 접근, 상황을 분석하고 측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압력에 대한 신뢰성, 문서 및 구두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대인관계 기술들, 종종 힘든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적응하고 개선될 수 있는 능력, 개인적으로 혹은 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¹⁶¹⁾

6. 미국의 일반대학 사례

1) 일반대학의 법의감식교육 전공과정

미국에서는 FBI를 비롯한 각급 법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범죄사건을 담당할 법의감식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십 개의 일반대학에서는 법의감식분야를 전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는 바, 短期자격취득과정(Certificate Program), 2년제(Two Year Undergraduate Program), 4년제(Four Year Undergraduate Program) 혹은

160)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general.html.

161)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apititude.html.

대학원(Graduate Program)전공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California에 있는 Rio Hondo College에서는 법의감식자격취득(Forensic Identification Certificate)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LA에 소재한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는 범죄수사학에 있어서 형사사법학위와 범죄수사학 석사학위(Criminal Justice degree and Master of Science degree in Criminalistics)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는 법과학을 전공한 형사사법학 석사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 외 여러 대학에서는 법인류학, 법과학, 법화학, 법생물학, 법감식학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에서 법의감식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은 졸업 후, 법집행 기관에서 경찰관, 수사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¹⁶²⁾ 이에 본항에서는 미국 뉴욕시에 있는 John Jay 형사사법대학의 법의학·법과학전공 과정을 사례로 소개한다.

2) 뉴욕 John Jay형사사법대학 사례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형사사법대학 학부과정 및 동대학원 형사사법학 박사과정(Doctoral

Program)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학부과정에는 경찰학전공(Police Studies), 범죄 및 컴퓨터정보시스템전공, 사법 및 공공행정전공, 교정학, 소방학, 형사사법전공(문학사 및 이학사), 법과학(Forensic Science), 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범죄학, 행정학, 민간경비학(Security Management) 등 20여 개 세부전공을 개설하고 있다.¹⁶³⁾ 특히 법과학 및 법심리학전공 커리큘럼을 상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과학전공과정

범죄수사, 범죄자신원확인, 감식업무, 법률쟁송과 관련된 증거의 평가 및 검증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실험 및 분석기법의 응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과정이다. Course Work은 대체로 화학 및 인접분야 전공 즉 생물학, 물리학, 법률, 수학, 범죄수사학, 毒物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특히 법과학 실험실(범죄수사학, 독물학, 병리학 및 환경 예방 시설), 연방, 주 및 지역경찰관서에서 근무할 학생들과 사설 연구소(화학, 약제제업, 보험회사, 독물 및 임상화학실험실)등에서 근무할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된 과정이다.

162) <http://www.crime-scene-investigator.net/csi-training.html>,163)

<http://web.jjay.cuny.edu/~crjphd/program/specialization.html>

164) Credits required(70) FIRST TWO YEARS All courses required Freshmen Biology 103-104. Modern Biology Chemistry 103-104. General Chemistry Subtotal: 18 Sophomores All courses required Chemistry 201-202. Organic Chemistry Chemistry 220; Quantitative Analysis Law 202; Law and Evidence Physics 203-204. General Physics CRIMINALISTICS TRACK (Last Two years) Subtotal: 23 Juniors Chemistry 302. Physical Chemistry II; Chemistry 315. Biochemistry; Chemistry 320. Instrumental Analysis; Chemistry 321. Instrumental Analysis; Forensic Science 313. An Introduction to Criminalistics for Forensic Science majors Subtotal: 18; Seniors

학생들은 범죄수사학분야와 독물학분야 중 한 분야에 대하여 집중 학습하게 된다. 전공학생들(70학점 이수)¹⁶⁴⁾ 석사 및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학부졸업생들은 법의학, 법의병리학, 치과학 및 정신의학 분야 전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법심리학전공과정

심리학과 형사사법시스템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주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위하여

개설한 과정이다. 심리학이론 및 응용, 관련연구방법론, 학제간연구 분야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심리학, 사회복지분야, 법집행분야 혹은 다른 형사사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합한 전공과정이다. 제1 전공필수(16학점), 제2, 3, 4전공선택(각 6학점씩) 등 34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¹⁶⁵⁾

Forensic Science 401. Forensic Science Laboratory Internship; Forensic Science 415. Forensic Science Laboratory; Forensic Science 416. Forensic Science Laboratory;

TOXICOLOGY TRACK (Last Two Years); Subtotal: 11; Juniors Chemistry 302. Physical Chemistry II; Chemistry 315. Biochemistry; Chemistry 320. Instrumental Analysis; Chemistry 321. Instrumental Analysis; Toxicology 313. Toxicology of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Agents Subtotal: 18; Seniors Forensic Science 401. Forensic Science Laboratory Internship; Toxicology 415. Forensic Pharmacology; Toxicology 416. Analytical Toxicology; Subtotal: 11 Total: 70

165) PART ONE. CORE COURSES All courses are required Psychology 200. General, Psychology II; Psychology 242. Abnormal Psychology; Psychology 311. Experimental Psychology; Psychology 370/Law 370. Psychology and the Law; Statistics 250. Principles and Methods of Statistics(Subtotal: 16); PART TWO. THEORETICAL FOUNDATIONS OF FORENSIC PSYCHOLOGY Select two courses Philosophy 310/Law 310. Ethics and Law; Psychology 202/Sociology 202. The Family: Change, Challenges, and Crisis Intervention; Psychology 221.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228. Psychology and Women; Psychology 231. Child Psychology; Psychology 232. Psychology of Adolescence and the Adolescent Offender Psychology 236. Group Dynamics; Psychology 243. Theories of Personality; Psychology 266. Psychology of Alcoholism; Psychology 268. Therapeutic Intervention in Alcoholism; Psychology 342. Introduction to Counseling Psychology; Psychology 442. Key Concepts in Psychotherapy; Social Science Research 325. Research Methods in the Behavioral Sciences; Sociology 203. Criminology; Sociology 309. Juvenile Delinquency(Subtotal: 6); PART THREE. FORENSIC PSYCHOLOGY ELECTIVES Select two courses Psychology 110/Sociology 110/Anthropology 110. Drug Use and Abuse in American Society; Psychology 235. Social Psycholog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sychology 271/Police Science 271.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Police Work; Psychology 272. Correctional Psychology; Psychology 275. Family Conflict and the Family Court; Psychology 372. Psychology of Criminal Behavior; Psychology 378. Field Work in Forensic Psychology I; Psychology 379. Field Work in Forensic Psychology II; Psychology 410. Independent Study; Psychology 476. Seminar in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Criminal Behavior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sychology 477/Sociology 477. Advanced Seminar in Youth, the Family and Criminal Justice(Subtotal: 6); PART FOUR. COGNATE COURSES Select two courses African-American Studies Psychology 240/Psychology 240. Psychology of Oppression; African-American Studies Sociology 121. Problems of the Black Ghetto; Anthropology 310/Sociology 310/Psychology 310. Culture and Personality; Anthropology 315. Systems of Law; Anthropology 330. American Cultural Pluralism and the Law; Anthropology 340. Anthropology and the Abnormal; Drama 325. Techniques in Crisis Intervention; Economics 315/Police Science 315. Economic Analysis of Crime; Government 206. Urban Politics; Government 430. Problems in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History 219. Violence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History 320. History of Crime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Law 209. Criminal Law; Law 212. The Criminal Process and Code of Criminal Procedures; Literature 327.

(3) 대학원 박사과정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의 교수진과 대학원 전공교수들이 박사과정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따르면, 형사사법, 범죄학 및 법과학 영역에서 학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과 경험적 연구 및 규범학적 분석을 결합한 과정이다. 대학원생들이 중점적으로 교육·훈련받는 분야는 사회과학방법론, 연구디자인, 통계학과 자료검색 등이다. 학생들이 범죄학이론, 형법, 형사절차법, 조직행동, 공공정책분석 및 형사사법심리학 등에 관한 배경적 토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부전공은 4개 분야인 바, 범죄학과 일탈, 법심리학, 법과 철학 그리고 공공정책과 조직행동 등이다. 형사사법 박사과정은 다양한 아카데미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바, 인류학, 역사, 법률, 철학, 정책과학, 공공행정, 심리학 및 사회학 등이다.

특히 법과학 세부전공은 생물학, 생물화학 그리고 화학분야 전문교수들이¹⁶⁶⁾ 강의를 맡고 있다. 법과학 집중과정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범죄수사학, 분광학(spectroscopy), 독물학, 혈청학(serology), 유전학적 분류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법과학 전공자에게는 일반화학, 조직화학, 미적분학,

물리학, 통계학, 생화학, 물리화학 강좌를 수강토록 하고 있다.

VI. 결론

형사소송절차의 이념 중에 하나는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다. 이 두 가지 이념이 서로 잘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의 형사사법기관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보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과학적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수사단계에서 빚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와 몇몇 무죄판결 사건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치명적인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에 필자는 한국 수사경찰의 과학적 수사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하여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입수, 비교·평가·연구하기에 이르렀다.

각국의 경찰제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경찰관 신규 입직과정에서 개설된 경찰교육은 내용이나

Crime and Punishment in Literature; Philosophy 102. Introduction to Ethics; Police Science 306. Police Work with Juveniles; Police Science 405. Organized Crime in America; Psychology 213/Sociology 213. Race and Ethnic Relations; Psychology 224/Anthropology 224/Philosophy 224/Sociology 224.;Death, Dying and Society: A Life Crises Management Issue; Sociology 216. Probation and Parole: Principles and Practices; Sociology 240. Social Deviance; Sociology 301. Penology; Sociology 302. Social Problems(Subtotal: 6).

166) Peter DeForest 교수는 법과학전공이며 증거추적 및 범죄현장수사 전문가이다. Gwendolyn Gerber교수는 법심리학을 전공자이며, 경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성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성적 학대 및 가정내 폭력문제를 다루고 있다. Robert Shaler 교수는 법생물학을 전공하였으며, DNA프로파일링과 범죄현장 재구성을 담당하고 있다.

기간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경급 기본교육의 경우, 독일은 30개월, 캐나다 9개월, 스위스 15개월이며, 한국은 겨우 6개월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교육과정에서 개설된 범죄수사 및 과학수사에 대한 기본 강좌 역시 한국경찰의 경우, 선진 각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부서에 근무하게 될 일반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 교육과정의 경우 최근 들어 「수사보안연수소」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감-경정급 수사간부 교육과정은 6개월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경위이하 실무자를 위한 전문화 교육과정은 대체로 2주~2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

일반대학의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법의학강좌」 개설동향에 의하면, 서울대 법과대학에서는 수강좌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해놓고 있지만, 여타의 법과대학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의과대학내 법의학강좌는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경북대의 경우 3명 전후의 전공교수들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경북대에서 설치한 특수대학원 형태의 「수사과학대학원」은 향후 한국의 법의학 교육 및 과학수사기반 구축에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법과대학에서는 법의학강좌를

비롯한 범죄수사학강좌까지 개설하고 있는 경향이며,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대부분 법의학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관내에서 발생한 번사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부검, 검시, DNA 분석, 독물분석 등에 이르는 다양한 법과학적 분석이 일반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법의학연구소에는 법의학·법과학 전문가 15명과 3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경찰이 되기 위한 전문화 교육과정의 경우, 계급불문하고 “33주”에 걸친 장기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경찰의 간부화 추진경향은 참고가 될만하다.

캐나다의 경우, 일반대학 범죄학부에 법과학분야 일부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BC주 공과대학·토론토대학 등에서는 법의학분야 전공과정을 개설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법의관사무실, 경찰, 법원, 사설연구소 등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연방경찰학교 및 경찰대학에서도 법의학분야 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 각급 법집행기관 요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의학 초보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은 무려 48개월에 이르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교육내용도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경우 국립훈련센터(NTC)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법의감식 훈련 프로그램은 내용의 전문성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장수사관양성과정, 사진촬영, 단계별 지문분석과정, 화재감식, 얼굴식별과정 및 법고고학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다. 경찰교육 기관에서 법의감식분야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십 여개의 일반대학에서 법의감식·법과학 관련한 전문자격 프로그램, 2~4년제 학위과정 및 대학원 전공과정까지 개설하고 있어, 법의감식 교육은 일반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수사 실무영역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교육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법원칙이 엄격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학적 수사를 통한 증거수집과 이를 통한 사실인정의 요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초동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과학적 수사자세는 전문화된 교육과 인사관리 방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 각국의 제도에 대해서 일별해 보았다. 참고할만한 제도도 있었지만, 당장 한국에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우선적으로 경찰교육을 통하여 수사직무의 전문성을 적극 향상시키고, 근무방식 개선과

인사관리(승진, 전보) 패턴을 개선하여 직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강좌는 일반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우수한 인적·물적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반대학의 그러한 시도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최근 전국에 80여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과학수사분야 및 법과학 전공강좌를 확대하고,¹⁶⁷⁾ 이러한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사경찰 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Hans Gross가 범죄수사학을 소개한지 어언 100년이 넘었지만, 「범죄수사학(Kriminalistik)」은 아직도 실무분야(Praxis)에 머물러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명실상부한 학문적 위상을 갖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은 기초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선호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근자에 들어와서 법의감식동호회, 법의학회, 법과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경찰의 과학수사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167) 법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고고학, 곤충학, 인류학, 심리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경찰(행정)학 전공자들로 하여금 관련분야를 부전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2003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 서울: 경찰청, 2003.
- 경찰청.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 서울: 경찰청, 2003.
- 곽대경.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 3호」.
 용인 : 한국경찰학회, 2001.
- 백형구. 「刑事訴訟法講義」. 서울: 박영사, 1994.
- 우상덕. 「법의학」. 서울: 최신의학사, 1987.
-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 서울: 현암사, 2002.
- 이삼재. 「科學搜查入門」. 서울: 정문출판사, 1983.
-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1999.
- 임준태. "독일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호」, 1999.

2. 외국문헌

- Lim, Joon-Tae. Verbrechensbekämpfung durch die vorbeugenden Maßnahmen der Polizei. Aachen: Shaker Verlag, 1999.
- Burstein, Harvey, Criminal Investigation An Introduc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99.
- Janet L. Jackson/Debra A. Bekerian. "Does Offender Profiling Have a Role to Play?", in: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et. al.: John Wiley & Sons, 2001.
- O.W. Wilson, et al.,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et al.: McGraw-Hill Companies, Inc., 1997.
- Rupprecht (Hrsg.), Polizei Lexikon, 2. Aufl., 1995.
- 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 Turvey, Brent, Criminal Profiling. San Diego et. al.: Academic Press, 2002.
- Weiland, Bernd, Einfuehrung in die Praxis des Strafverfahrens, 2. Aufl., 1996.
- Wirth/Strauch. Rechtsmedizin. Heidelberg: Kriminalistik Verlag, 2000.

3. 신문기사

동아일보 2001년 05월 30일 27면 등; 세계일보 2002년 09월 30일 22면 등
 월간조선 1999년 2월호; 조선일보 1996년 06월 26일자.
 중앙일보 1997년 06월 21일 6면 등; 한국일보 2003년 02월 27일 29면 등

4. 인터넷자료

<http://www.ncpa.go.kr/newpol/newpol2.htm>.
 『2003년도』간부후보생 신입교육과정 in: <http://www.pca.go.kr/>
<http://www.zsps.ch> 2000.08.02.
http://kr.ks.yahoo.com/service/question_detail.php?queld=289133.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7570>.
http://board1.chol.com/board/servlet/board?boardid=NET_WEBNEWS_1&cmd=READ&page=1&gubun=&idnum=32.
<http://org.catholic.or.kr/chrc/t-main2-1.htm>.
<http://www.kifos.com/fos/fos.htm.html>.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s-1.html>.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c-class.html>.
<http://www.nisi.go.kr/>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front&p=%B9%FD%C0%C7%C7%D0>.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3934>.
<http://www.nisi.go.k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4406>.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s-1.html>.
http://law.snu.ac.kr/Information/info_process.asp.
http://medicine.snu.ac.kr/professor/main3_sub03.asp#p01.
http://medicine.yonsei.ac.kr/class_subject/subject/law/intro_subject/contents.asp?con_no=734&sub_no=0&page_no=1.
<http://pathology.yonsei.ac.kr/student/2003%20법의학%20강의계획표.htm>.
<http://www.korea.ac.kr/~leg-med/intro.htm>.
<http://www.korea.ac.kr/~leg-med/staff.htm>.

http://www.kyungpook.ac.kr/index11_grad.html,
<http://www.cuk.ac.kr/>
[http://www.hanyang.ac.kr/search/gwamok/detail.phtml?haksu_no=MED331&cd=H3HBDC
&title=법의학](http://www.hanyang.ac.kr/search/gwamok/detail.phtml?haksu_no=MED331&cd=H3HBDC&title=법의학),
<http://www.jura.uni-freiburg.de/fs/alt/files/kvv/kvwws962.htm>
<http://www.uniklinik-freiburg.de/i/rme/de/auw/index.xml>,
<http://www.med.uni-heidelberg.de/einrichtungen/rechtsmedizin/index.html>,
<http://www.med.uni-heidelberg.de/rechtmed/organigr.htm>,
<http://www.sfu.ca/criminology/facstaff.htm>,
<http://www.sfu.ca/criminology/Offs033.html>,
<http://www.erin.utoronto.ca/~w3fsc/>
<http://www.erin.utoronto.ca/~w3fsc/DoubleMajorProgram.htm>,
http://programs.bcit.ca/program.php3?program=pt_btech_comp_02,
http://www.cpc.gc.ca/scienc_e.htm,
http://www.cpc.gc.ca/sciences/ficour_e.htm,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fic_e.htm,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sfic_e.htm,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bbprc_e.htm,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hfcc_e.htm,
http://www.rcmp-grc.gc.ca/firs/fiatp_e.htm,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Forensic,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overview.html>,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intro.html,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2_intro.html,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3_intro.html,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4_intro.html,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general.html,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apititude.html,
<http://www.crime-scene-investigator.net/csi-training.html>,
<http://web.jjay.cuny.edu/~crjphd/program/specialization.html>
<http://www.jjay.cuny.edu/programsUndergraduate/progUndeGradBacc.asp>.